

언론중재

Spring 2016



vol.138

Focus On Media

디지털 퍼스트 시대 뉴스의 중심, 이용자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해외 글로벌 뉴스 플랫폼의 쇄도와 법적 문제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판결

유럽사법재판소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 판결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변화

인쇄 2016년 3월 28일
발행 2016년 3월 30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 00002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 언론중재위원회 (www.pac.or.kr)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114

디자인·인쇄 (주)희망공작소
편집위원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이수영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기자 /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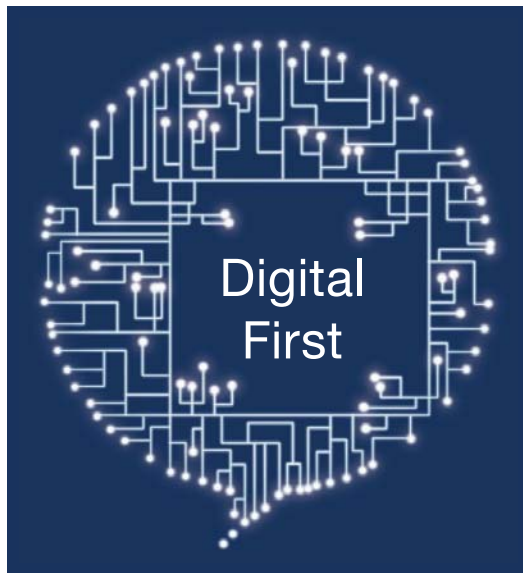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

Spring 2016 | vol.138



contents

06 Focus on Media

디지털 퍼스트 시대 뉴스의 중심, 이용자

1. 뉴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변화, 언론의 법적 개념도 바꿀까? | 양정애
2. 알고리즘 편집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 박아란
3. 이용자는 저널리스트? MCN의 급부상과 미디어 리터러시 | 김균수

40 사건 속 법률

'제국(帝國)'과 자유 -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 장철준

50 칼럼

언론의 품격을 해치는 것들 | 손수호

54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해외 글로벌 뉴스 플랫폼의 채도와 법적 문제 | 전응준



64 판례토크

생방송 인터뷰 보도의 객관성 판단 기준은? | 노만경

72 Culture & Legal M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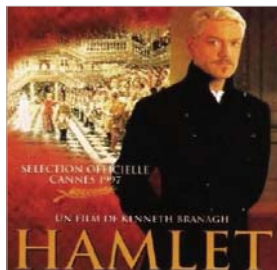
셰익스피어와 민주주의 | 박흥규

78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판결

유럽사법재판소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 판결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변화 | 최경진

88 해외통신원

중국 '신(新) 국가안전법' 제정과 사이버 규제의 강화 | 문혜정



뉴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변화, 언론의 법적 개념도 바꿀까?

양정애 ·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

미디어 이용자들이 ‘뉴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언론매체’를 어느 범위까지로 보는가는 뉴스생태계의 발전이나 법적·제도적 정비에 있어 언론인이나 학자들이 생각하는 뉴스 및 언론의 정의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일 것이다.

‘뉴스’란 무엇이며 어느 범위까지를 뉴스로 볼 수 있는가는 필자와 같은 언론학자가 답하기에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사실 뉴스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뉴스 개념 정의에 대한 기존의 여러 접근법들을 분류하고자 시도한 말릭과 동료들¹⁾은 크게 3가지 차원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인류학적’ 접근인데,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모든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고 인간의 환경감시에 필요한 최신 내지 최근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뉴스로 간주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민으로서 사회 이슈나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뉴스로 정의하는 ‘규범적’ 접근으로, 뉴스의 사회적 역할에 방점이 있고 공공적 성격의 정보만을 뉴스에 포함시킨다. 셋째, ‘경험적’ 접근은 개인마다 뉴스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사람들이 뉴스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의 사회적 기능, 즉 시민들이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사안에 대한 정보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뉴

1) Malik, M., Cortesi, S., & Gasser, U., 2013, "The challenges of defining 'news literacy'",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342313(검색일: 2016. 2. 29)

스에 대한 규범적 접근은 사회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뉴스를 이용하는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규범적 차원보다는 뉴스와 관련된 자신의 직접 경험이나 선호가 뉴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뉴스가 생산, 유통되고 소비되기까지의 전체 지형을 의미하는 뉴스생태계에서 뉴스 소비(이용)자는 뉴스 생산자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SNS 등을 통해 뉴스의 파급·확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직업 언론인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문적인 뉴스를 생산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미디어 이용자들이 ‘뉴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언론매체’를 어느 범위까지로 보는가는 뉴스생태계의 발전이나 법적·제도적 정비에 있어 언론인이나 학자들이 생각하는 뉴스 및 언론의 정의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일 것이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최신 조사결과들을 <미디어이슈>,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등을 통해 몇 차례 발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 조사결과들을 바탕으로 ‘언론’의 법적 개념 변화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미디어 정보 분야/주제별 ‘뉴스’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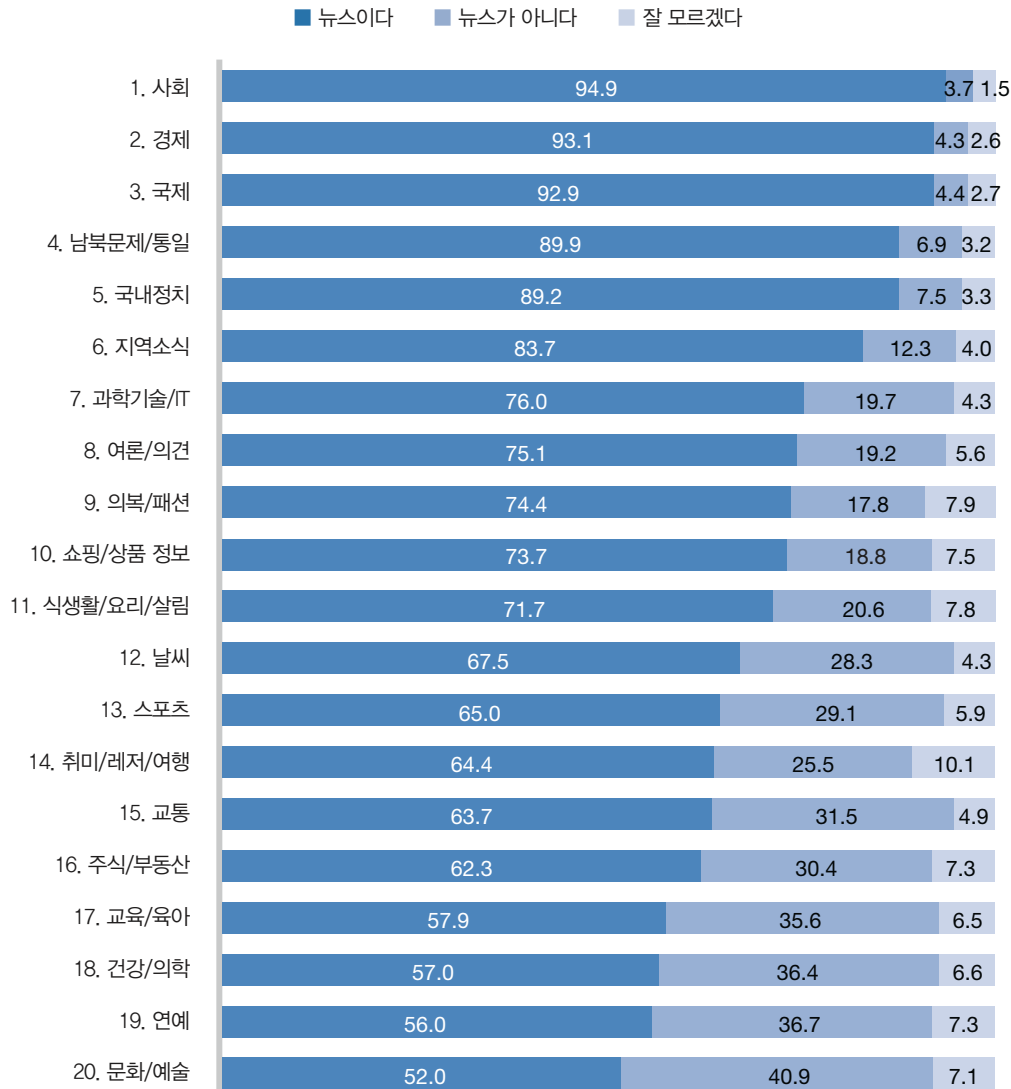
뉴스는 ‘정보’의 부분집합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뉴스는 정보라는 범주에 포함되지만 정보라고 해서 다 뉴스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보가 ‘뉴스’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뉴스에 대해 대다수가 동의하는 합의된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뉴스를 규정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 중 하나는 뉴스라 불리는 정보가 지니는 어떤 공통적인 속성(property) 내지 요건을 뽑아내고 이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연구²⁾에서 뉴스를 구성하는 핵심적 속성으로 ① 특정한 개인이 아닌 공공(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익과 관련됨, ② 미디어를 통해 전달 혹은 유통됨, ③ 시의성, 즉 현재 시점의 상황이나 문제와 관련됨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해 뉴스를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나 이익에 관한 시의성 있는 정보”로 정의했다. 이러한 뉴스 개념에 따르면, 전문 언론인이 생산한 뉴스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뿐 아니라 일반인이 작성해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확산시키는 정보 또한 뉴스의 범위에 포함된다. 전자는 ‘뉴스기사’라 별도로 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뉴스기사는 결국 뉴스의 부분집합인 것이다.



2) 양정애·최숙·김경보, 2015, 『뉴스 리터러시 교육 1 : 커리큘럼 및 지원체계』 (한국언론진흥재단).

Focus on Media 1

디지털 퍼스트 시대 뉴스의 중심, 이용자



〈그림 1〉 각 분야/주제별 미디어 정보에 대한 '뉴스' 인식 정도 (단위 %)

뉴스기사, 즉 직업 언론인이 전문적으로 생산한 뉴스에 한정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정보 유형들 가운데 이용자들이 무엇을 뉴스로 보고 무엇을 뉴스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³⁾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2015년 10월 16~20일, 20~50대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 20개 정보 분야/주제 각각을 뉴스로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사회(94.9%), 경제(93.1%), 국

3) 양정애, 2015, "사람들은 어떤 미디어를 '언론매체'로 보는가", 『미디어이슈』 1권 16호(한국언론진흥재단), 7쪽.

제(92.9%), 남북문제/통일(89.9%), 국내정치(89.2%), 지역소식(83.7%)과 같이 전통적 뉴스주제에 해당하는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대다수(80% 이상) 응답자들이 뉴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로 생각하는 비율이 70%대로 나타난 주제들에는 과학기술/IT(76%), 여론/의견(75.1%), 의복/패션(74.3%), 쇼핑/상품 정보(73.7%), 식생활/요리/살림(71.7%)이 포함됐다. 이처럼 중위권 순위에 오른 주제들에는 생활밀착형 정보가 많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에 비해 뉴스매체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다뤄온 연성뉴스 주제인 스포츠(65%), 연예(56%), 문화/예술(52%)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뉴스로 간주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결국 지금의 미디어 이용자들은 전통적 뉴스주제들과 더불어 일상생활에 관한 미디어 정보 또한 뉴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뉴스 주제

다음으로 이용자들이 관심 있어 하거나 선호하는 뉴스 분야/주제를 조사한 결과를 앞서 살펴본 결과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는 2014년 조사부터 20여 개 뉴스 분야/주제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돼 있다. 2015년 조사에는 위 <미디어이슈> 설문에서와 동일한 20개⁴⁾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문항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두 결과상 순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대 이상 성인남녀 5,000여명에게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뉴스 분야/주제는 건강/의학(3.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5점 척도에서 선호도 평균점수 3점대 중반을 보인 주제들로는 사회(3.55), 날씨(3.51), 경제일반(3.44), 취미/레저/여행(3.42)이 있었다. 그 다음 10위까지의 순위에는 식생활/요리/살림(3.21), 교통(3.19), 스포츠(3.17), 쇼핑/상품 정보(3.16), 의복/패션(3.16)이 포함됐다. 총 20개 유형 중 10위안에 든 주제들은 ‘사회’와 ‘경제일반’, ‘스포츠’를 제외하고 모두 생활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내정치(3.15), 지역뉴스(3.11), 국제(2.88), 남북문제/통일(2.70)과 같은 대표적인 경성뉴스 주제들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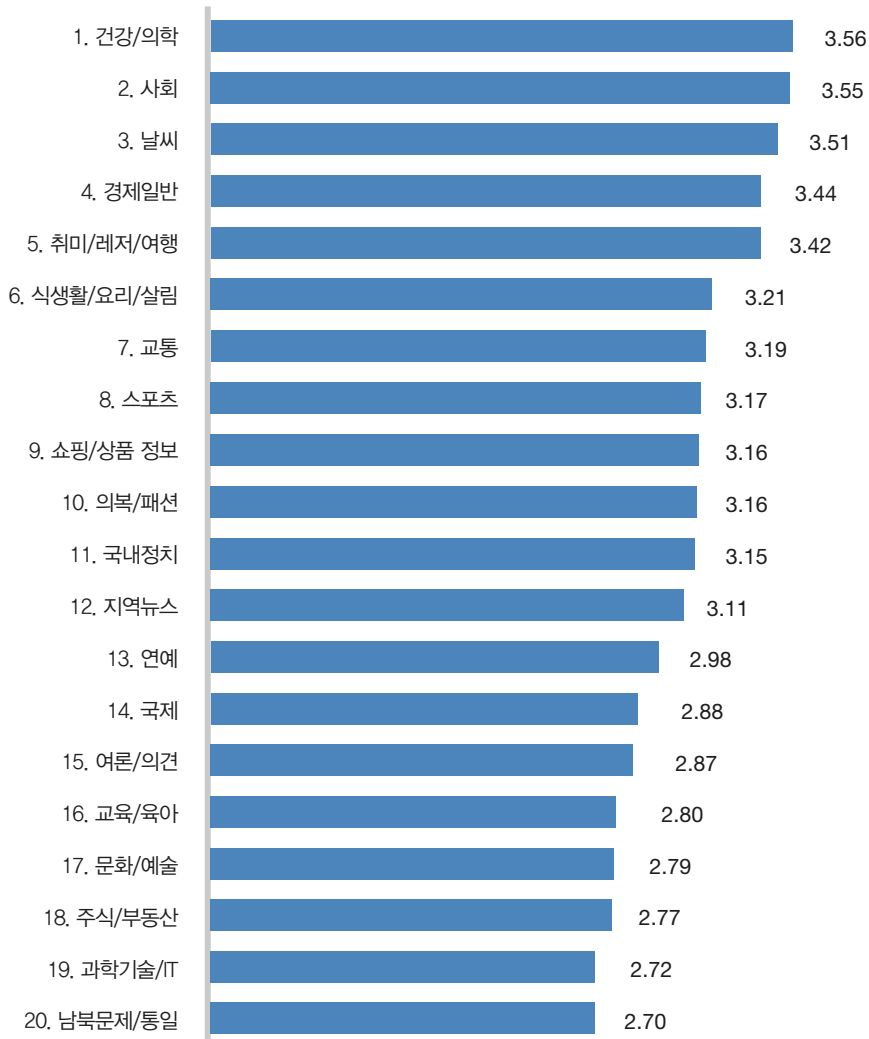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주제별 미디어 정보의 ‘뉴스’ 인식 정도 결과와 함께 종합해보면 이용자들은 대체

4) 실제 <2015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는 ‘광고’까지 총 21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관심도 점수 평균 2.63점으로 21위). ‘광고’를 뉴스 분야/주제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앞서 제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광고’가 배제돼 있었으므로 두 조사결과의 직접 비교를 위해 본고에서는 ‘광고’ 관련 결과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Focus on Media 1

디지털 퍼스트 시대 뉴스의 중심, 이용자

로 전형적 경성뉴스 주제들을 다룬 미디어 정보를 ‘뉴스’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해당 주제에 대한 개인적 관심도는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신 ‘뉴스’라고 여기는 비율에서는 중위권에 많이 포진되었던 여러 유형의 생활정보들에 대해 이용자들은 비교적 관심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밀착형 정보는 스포츠, 연예, 문화/예술과 같이 전통적으로 뉴스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던 연성뉴스 주제라기보다는 근래 들어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 정보 콘텐츠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방대한 정보의 터미 가운데서 어떤 것을 뉴스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인, 언론학을 전공한 학자들 또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의 인식과 선호를 중요하게 고려하고자 한다면 각종 생활 정보들 또한 뉴스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 뉴스 분야/주제별 관심도 (5점 척도)

플랫폼별 뉴스 이용자 비율

디지털, 융합, 모바일, SNS, 개인화 등의 키워드를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정보 영역 안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뉴스로 볼 것인가 하는 경계 설정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경로의 다변화로 ‘언론매체’ 내지 ‘뉴스미디어’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이슈 또한 난제가 되어버렸다. 법제를 정비하는 데는 현상에 대한 충분한 관찰과 사회적 논의,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 등이 필요하기에 대개 법률이 현실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디어 영역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폭이 넓으며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기도 어렵다보니, 미디어 관련법에서 무엇을 ‘언론’으로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 또한 현실과 법률 간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미디어라고 해서 모두 다 언론매체로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 차원에서도 또 실익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접근은 아닐 것이다. 법률이 현실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방편들 중에는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며, 어떤 미디어를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접근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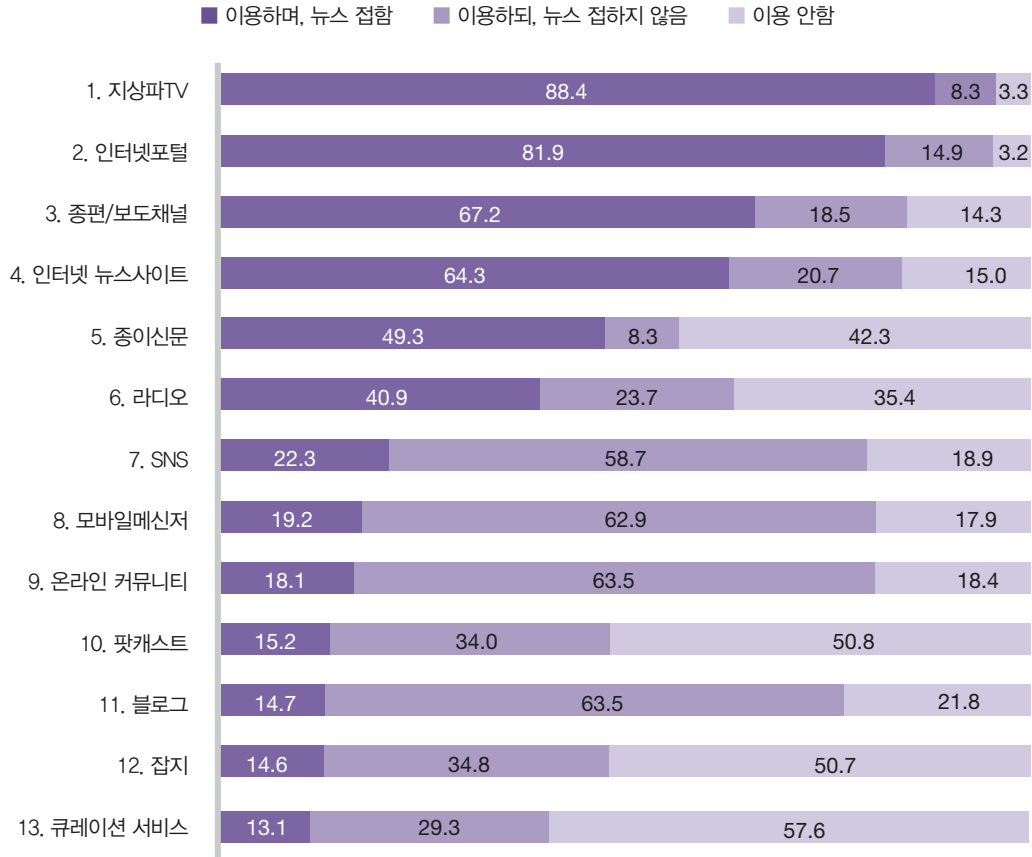
먼저 사람들이 어떠한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부터 살펴보자. 앞서 소개했던 주제별 미디어 정보에 대한 ‘뉴스’ 인식 정도를 알아본 온라인 설문⁵⁾에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경로 13개를 제시하고 각 경로별 이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으로 각 매체별 이용자에 한해 해당 경로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지를 조사했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상파TV와 인터넷포털을 통해 뉴스를 본다는 비율은 각각 88.4%와 81.9%로, 응답자 대다수가 이에 해당했다. 대략 65% 내외의 설문참여자들은 종편/보도전문채널과 인터넷 뉴스사이트(오프라인 언론사의 닷컴사이트+인터넷 전용 언론사)를 뉴스이용 매체라고 답했다. 텔레비전과 함께 대표적인 전통 뉴스매체(소위 ‘4대 매체’)로 분류되는 신문과 라디오, 잡지를 통해서는 각각 49.3%, 40.9%, 14.6%가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최근 뉴스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의 경우, 대략 10~20% 범위의 응답자들만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NS 22.3%, 모바일 메신저(예: 카카오톡) 19.2%,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18.1%, 팟캐스트 15.2% 등이었다.



5) 앞의 「미디어이슈」 1권 16호.

Focus on Media 1

디지털 퍼스트 시대 뉴스의 중심,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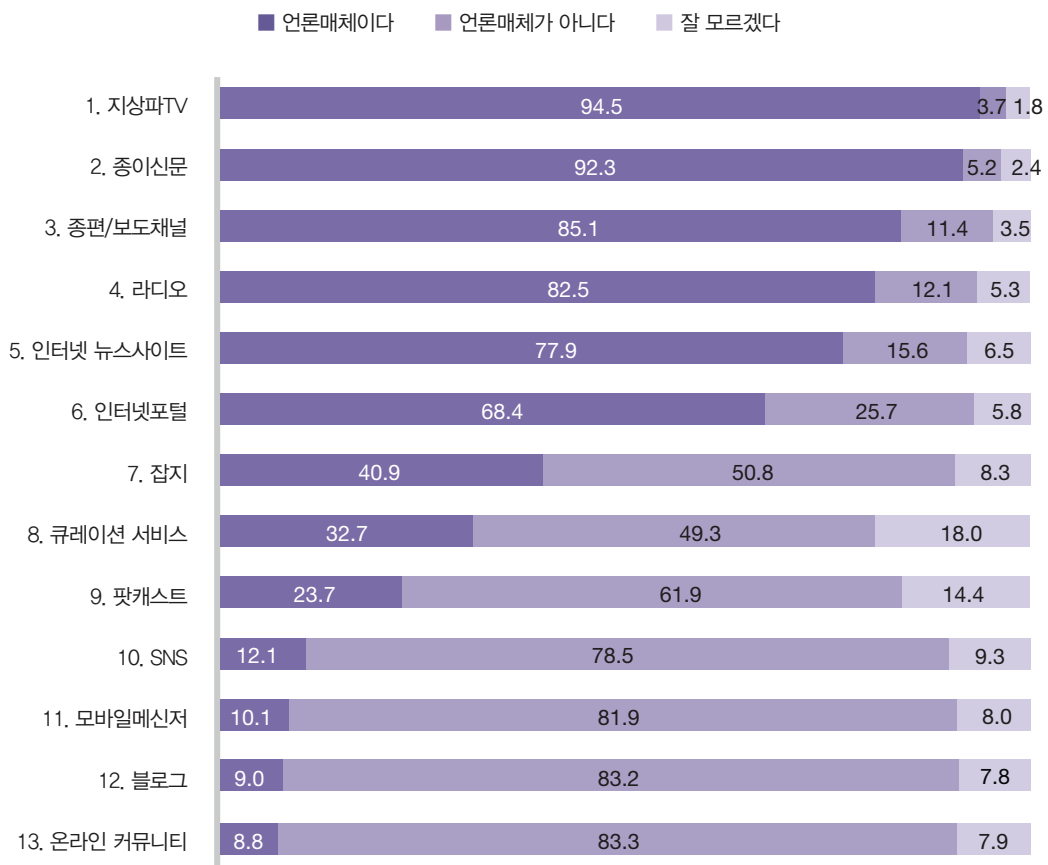
〈그림 3〉 각 미디어에서 뉴스를 접한다는 응답자 비율 (단위 %)⁶⁾

플랫폼별 ‘언론매체’ 인식 정도

위 조사에는 이용자들이 각 뉴스 플랫폼을 ‘언론매체’로 인식하는지를 전체 응답자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답한 사람들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도 포함돼 있다. 먼저, 해당 매체로 뉴스를 보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응답자 1,030명 전체가 각 뉴스 플랫폼을 ‘언론매체’로 간주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소위 ‘전통 4대 매체’ 중 잡지를 제외하면 TV(지상파+종편/보도채널), 신문, 라디오 모두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언론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3개 플랫폼 유형 가운데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77.9%가 ‘언론매체’라고 답한 인터넷 뉴스사이트였고, 앞서 살펴봤듯이 지상파TV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

6) ‘큐레이션’이란 수많은 콘텐츠를 일정한 기준으로 선별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재가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후 제공하는 고도의 편집 서비스를 말함. 피카캐스트, 플립보드, 핀터레스트 등이 이에 해당함.

들이 뉴스를 접하는 경로인 인터넷포털의 경우 그보다 10%p 가량 낮은 68.4%가 '언론매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큐레이션 서비스와 팟캐스트 이용자의 뉴스매체 인식에 관한 부분이다. 큐레이션 서비스와 팟캐스트는 매체 이용자 비율이 각각 전체 응답자의 42.4%, 49.2%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는 비율도 13.1%, 15.2%에 불과했다. 그러나 큐레이션 서비스와 팟캐스트를 '언론매체'로 인식한다고 답한 사람들(32.7%, 23.7%)이 이용자 비율 81%로 조사된 SNS를 '언론매체'로 여기는 사람들(12.1%)보다 약 12~21%p 가량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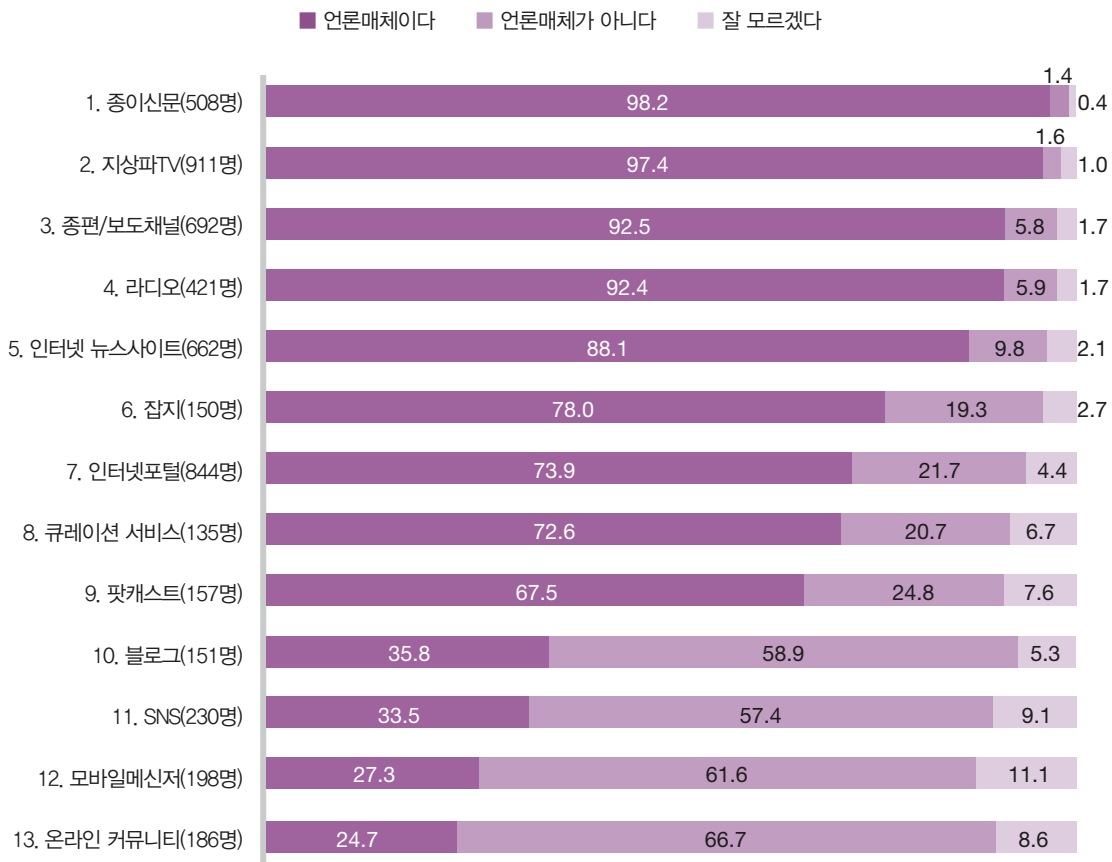
〈그림 4〉 (전체 응답자) 미디어 유형별 '언론매체' 인식 정도 (단위 %)

〈그림 5〉는 각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답한 사람들에게 한정해서 이들이 해당 플랫폼을 '언론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뉴스사이트가 상위권에 랭크된 것은 전체 응답자로부터 얻은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이들 매체의 경우 88%가 넘는 뉴스 이용자 절대다수가 '언론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매체들 중에는 잡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눈에 띄는데, 응답자 전체 중 40% 가량만

Focus on Media 1

디지털 퍼스트 시대 뉴스의 중심, 이용자

이 ‘언론매체’라고 답했던 데 비해 잡지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약 2배에 해당하는 78%가 ‘언론매체’로 간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포털의 경우 순위변동이 없기도 했지만, ‘언론매체’라고 답한 비율의 차이도 5.5%p(전체 응답자 68.4%, 포털뉴스 이용자 73.9%)에 불과해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포털을 ‘언론매체’로 여기는 비율은 대략 70%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 기반 플랫폼들 중 가장 극적인 비율 변화가 관찰된 것은 큐레이션 서비스와 팟캐스트였다. 전체 응답자 대비 해당 매체 뉴스 이용자의 ‘언론매체’ 인식 비율의 차이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약 40%p, 팟캐스트가 44%p로 두 유형 모두 해당 플랫폼으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에 한정했을 경우 ‘언론매체’로 인식한다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수치 자체도 70% 내외로 인터넷포털과 별 차이가 없었다. SNS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언론매체’ 인식 비율(12.1%)에 비해, SNS를 통해 뉴스를 보는 사람들에 한정했을 때는 그 비율이 약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33.5%로 높지 않다는 점에서 SNS를 뉴스 플랫폼으로 이용하더라도 해당 미디어를 ‘언론매체’로 간주하지는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뉴스 이용자) 미디어 유형별 ‘언론매체’ 인식 정도 (단위 %)

언론의 법적 개념 변화 가능성

각 뉴스 플랫폼을 ‘언론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을 전체 설문응답자와 해당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자로 구분해서 살펴본 위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결국 이용자들이 해당 미디어를 ‘언론매체’로 인식하는 정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뉴스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그것이 아니라면 큐레이션과 같이 내용에 관해 창조적인 가공을 거치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매체에 더해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대표적인 인터넷기반 플랫폼인 인터넷 뉴스사이트가 상위권에 랭크된 점, 내용의 재가공 등 고도의 편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큐레이션이나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팟캐스트가 주로 언론을 통해 생산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채널로 기능하는 SNS, 블로그에 비해 ‘언론매체’로 인식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상파TV와 더불어 97%에 육박하는 응답자들이 이용하며, 이용자 중 해당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본다는 사람 또한 지상파TV 다음으로 많은 5명 중 4명꼴인 인터넷포털의 경우,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도 그렇다고 언론사 기사에 대한 내용편집을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70% 내외)이 인터넷포털을 ‘언론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많은 이용자 수와 그에 따른 막대한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사람들의 뉴스 이용실태와 ‘언론매체’ 인식을 중심에 놓고 보자면 인터넷포털은 분명 언론매체로 분류할 수 있다. 뉴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내용을 재가공하지는 않지만 기사 배열과 같은 편집 행위를 통해 뉴스 이용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를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이 하는 역할은 사건을 취재해서 뉴스기사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좁은 의미의 ‘뉴스 생산’에 더해 작성된 기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각 기사에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부과할 것인지를 ‘편집’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정한다. 이 모든 절차가 다 게이트키퍼(gate-keeping), 즉 취재할 소재를 찾는 것에서부터 기사를 작성하고, 작성된 기사를 최종 배치하기까지의 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된다. 개별 기사에 부여된 여러 가지 편집요인들(예: 기사 위치나 길이, 헤드라인 크기, 사진사용 여부 등)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여러 기사들 가운데 해당 기사가 지니는 상대적 중요도를 가늠하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들은 매우 오래 전부터 축적돼 왔다.⁷⁾ 이는 어떤 기사를 제공하는지 만큼이나 동일한 기사를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중요하

7) 이에 대한 상세한 문헌검토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양정애, 2011, “뉴스 기사의 현저성과 이용자의 선택적 노출: 온라인 뉴스의 ‘인기기사’ 추천 효과”, 『한국방송학회』 25권 2호, 77-116쪽.
Yang, J.-A., 2015, “Effects of popularity-based news recommendations (“most-viewed”) on users’ exposure to online news”, *Media Psychology*, <http://dx.doi.org/10.1080/15213269.2015.1006333>.

며 이러한 편집요인이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과거 뉴스생태계에서는 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모두 언론사가 담당했으며 이용자의 역할 또한 생산자(언론사 및 언론인)와 뚜렷이 구별되는 ‘소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은 미디어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뉴스 ‘생산’과 ‘유통’의 영역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들을 자체 웹사이트가 아닌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포털을 통해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결국 포털은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접점, 즉 뉴스 플랫폼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과거 언론사가 하던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 자주 또 많이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포털이라는 점에서 이를 언론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언론의 법적 개념 논쟁의 중심은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였다. 이를 판단하는 데는 다양한 근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용자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면 포털은 언론매체라 할 수 있다. 뉴스 플랫폼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에 맞는 책무성이 부과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상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언론이라는 사실이 곧 규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포털이 언론이라면 언론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동시에 언론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포털과 관련된 언론의 법적 개념 논쟁은 뉴스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SNS, 큐레이션 서비스 등을 언론매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이슈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서 살펴본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은 이들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대략 5~6명 중 1명꼴) 이러한 논의가 시기상조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SNS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작년에 각각 ‘인스턴트 아티클(Instant Articles)’과 ‘모멘트(Moments)’라는 뉴스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러한 추세는 다른 SNS 업체들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또한 콘텐츠를 2차적으로 재가공한다는 측면에서 단순 편집(기사배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과 그 성격이 뚜렷이 구별되는 큐레이션의 경우, 이를 뉴스 및 정보 콘텐츠에서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의 조사결과에서 특히 큐레이션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는 사람들에게 한정하면 72.6%가 ‘언론매체’라고 답했으며, 이 수치는 인터넷포털(73.9%)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면 현재 포털이 그러하듯이 국민 대다수가 큐레이션 서비스를 언론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뉴스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SNS를 ‘언론매체’로 간주하는 비율이 3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SNS가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체로 인식되고 있고, 앞서 기술했듯이 아직까지는

언론을 통해 생산된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 개인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시키는 채널로서의 기능이 중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NS 업체들이 뉴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앞으로 SNS가 포털에 버금가거나 이를 능가하는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은 단시간에 급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SNS 페이스북이 뉴스서비스 ‘인스턴트 아티클(Instant Articles)’의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으로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버즈피드도 국내 시장에 상륙하는 등 굵직한 사건들이 예고되어 있다. 이들이 국내 뉴스생태계와 미디어 지형에 가져올 변화의 구체적 양상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크고 작은 변화들로 인해 머지않은 미래에 인터넷포털이 지배적인 뉴스 플랫폼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는 또 다른 인터넷기반 서비스로 ‘모바일메신저’가 주목받고 있다. 일명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뉴스 콘텐츠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KT 경제경영연구소는 <2016 모바일 트렌드 전망>⁸⁾에서 앞으로 모바일메신저가 점차 더 많은 인터넷 서비스 유형들을 흡수하며 SNS보다 더 크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운영체제(OS)보다 더 중요한 사업 영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포털도 그렇지만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이러한 플랫폼들에게 뉴스는 그들이 제공하는 여러 콘텐츠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언론사들 또한 전통적 의미의 뉴스 외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듯 유력한 플랫폼들이 특정 콘텐츠 전문이 아닌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콘텐츠 제공자로 거듭나면서 앞으로 ‘언론’을 규정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시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날의 미디어 이용자들 상당수는 각종 생활정보를 ‘뉴스’로 인식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다. 이로 인해 정보 콘텐츠 안에서 ‘뉴스’ 영역의 경계는 점차 더 희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성은 언론의 범위 인식 및 법적 개념이 바뀌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좀 더 먼 미래에는 ‘언론’이라는 용어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8) http://www.digieco.co.kr/KTFront/report/report_issue_trend_view.action?board_seq=10712&board_id=issue_trend# (검색일: 2016. 2. 29.)

알고리즘 편집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박아란 · 언론학 박사, 「언론중재」 편집위원

“뉴스 망에 걸린 다양한 사건들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 속에서 편집자들은 교섭을 통해 계속적으로 판단의 기준을 만들고 또 고쳐나간다. 뉴스 가치의 판단 활동을 통해, 이번에는 편집자들이 사회적 질서와 일관성을 부여하는 틀로서 뉴스 망 구성요소로서의 기자나 통신원들이 타당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긍정하고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게이 터크만, 『메이킹 뉴스: 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연구』, 1978)

11년간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참여관찰을 통해 뉴스 제작진이 현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해 나가는가를 관찰한 터크만은 저서 『메이킹 뉴스』에서 뉴스 제작진들이 일종의 틀을 가지고 뉴스를 제작하고 그 틀에 따라 뉴스의 내용이 윤색됨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뉴스의 제작과정은 현장에서 기자가 취재해 마감시간에 맞춰 작성한 기사를 데스크가 선별하고, 전문편집자가 적절한 제목을 달고 편집하여 뉴스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그러나 이러한 뉴스 생산과정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저널리즘 영역에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 저널리즘(algorithm journalism)’이다.

뉴스와 알고리즘 저널리즘

알고리즘이란 어떤 값이나 값의 집합을 입력으로 받아 다른 값이나 값의 집합을 출력하는 잘

정의된 계산 절차를 말하며, 알고리즘은 주어진 입력을 논리적으로 처리해 유효한 결과 값을 만들도록 설계된다.¹⁾ 이러한 알고리즘이 저널리즘 영역에서 구현된 ‘알고리즘 저널리즘’이란 저널리즘 행위과정 전반에서 컴퓨팅 기술에 의한 알고리즘이 개입되는 것을 말한다. 즉 뉴스의 취재, 작성, 편집 등 저널리즘 행위 과정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로봇 저널리즘(robot journalism)’으로 불리기도 한다.²⁾

알고리즘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뉴스 클러스터링(news clustering)’이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뉴스들 간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비슷한 뉴스끼리 자동으로 묶어서 중요한 주제를 찾아내는 방식을 뜻하며, 이러한 클러스터링 방식은 ‘어뷰징(abusing)’을 배제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카카오가 개발한 ‘루빅스(RUBICS: Realtime User Behavior-based Interactive Content recommender System)’ 알고리즘은 클러스터링을 통해 뉴스를 자동으로 선별해서 보여주고 있다. 카카오의 루빅스 도입 이전에는 에디터들이 뉴스 카테고리 별로 분담해서 편집원칙에 따라 기사를 다음의 메인 화면에 직접 배치했다. 그러나 반응형 콘텐츠 추천시스템인 루빅스를 도입한 이후에는 (1) 클러스터 분석 후 (2) 문서간 중복/어뷰징 필터링을 한 번 더 적용하고, (3) 편집원칙에 반하는 문서가 없는지 최종 검수한 후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잔인한 이미지 또는 기사를 가장한 광고들을 제거하고 남은 기사들을 루빅스 풀에 넣어서 모바일 뉴스 이용자 화면에 맞춤형으로 자동배열 되도록 하고 있다.³⁾

네이버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의 알고리즘은 크게 3가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1) 우선 비슷한 뉴스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2) 비슷한 뉴스를 어떻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지, (3) 묶은 그룹 안에서 톱기사는 어떻게 결정할지이다. (1), (2)는 토픽 감지 및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3)은 랭킹 알고리즘이 담당하는데 네이버는 이러한 알고리즘에 어떤 요소가 반영되는지는 일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⁴⁾



1) 김동한·이준환, 2015, “로봇 저널리즘: 알고리즘을 통한 스포츠 기사 자동 생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9-5호, 64-95쪽.
 2) 김영주·오세욱·정재민, 2015, 『로봇 저널리즘: 가능성과 한계』(한국언론진흥재단).
 3) 카카오, 2015. 9. 14, “맞춤형 추천뉴스 루빅스를 소개합니다”, <http://blog.kakaocorp.co.kr/412>(검색일: 2016. 3. 6.)
 4) 『블로터』, 2015. 4. 6. 이성규, “네이버는 어떻게 낚시성 기사를 걸러낼까”, <http://www.bloter.net/archives/224545>(검색일: 2016. 3. 6.)

구글은 뉴스에 각각의 순위를 부여해 순위에 따라 뉴스를 배열하는 ‘뉴스 랭킹(news ranking)’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구글은 뉴스 랭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개하였는데, 그 13가지 요인은 언론사의 기사 생산량, 기사의 길이, 기사의 중요성, 기사의 속보성, 사용 패턴, 이용자 의견, 수용자와 트래픽, 뉴스 생산자 수, 뉴스 지국의 수, 기사에서 취재된 기관의 수, 뉴스의 범위, 국제적 열독 범위, 기사작성 스타일 등의 요소이다.⁵⁾ 이러한 알고리즘 영향 요인을 고려해보면 구글 뉴스에서는 규모가 큰 전통적 언론매체가 생산한 기사가 뉴스 랭킹에서 보다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대표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은 2015년 5월부터 세계 350여개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를 제공하는 ‘인스턴트 아티클스(instant articles)’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페이스북은 인스턴트 아티클스 서비스를 위해 페이스북 서버 안에서 각 언론사의 신문 기사를 바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인링크’ 방식을 채택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기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뉴스 큐레이션, 팟캐스트, 앱 뉴스, 1인 미디어 등 새로운 형태의 뉴스 유통 수단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의 뉴스 선별 과정에 알고리즘이 개입되는 정도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언론으로서 기능하며 저널리즘 수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널리즘과 같이 공공영역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경우 비판적 연구영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⁶⁾ 그렇다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우리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알고리즘의 적용이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포털의 뉴스 편집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알고리즘이 적용되기 이전의 포털의 뉴스 편집 및 배치 기능과 법적 책임에 대해 우리 법원은 2008년과 2009년에 이미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네이버가 매개한 노컷뉴스 기사에 대해 네이버가 과연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⁷⁾ 서울고등법원은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이 언론매체의 핵심적 기능이라고 판단한 뒤, 네이버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다. 고등법원의 판단에 의하

5) Google, 2012. 2. 28. “Systems and Methods for Improving the Ranking of News Articles”. <https://www.google.com/patents/US8126876>(검색일: 2016. 3. 6.)

6) 오세욱, 2015. “알고리즘과 저널리즘의 만남: 알고리즘 필진성(verisimilitude)” 한국언론학회 2015년 봄철정기학술대회 발표문.

7)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면 (1) 당시 네이버는 100여개의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고 하루 평균 1만여 건의 기사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기사 하단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제공하여 단순히 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보교환 또는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도 월등한 배포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2) 네이버는 언론사들이 전송하는 기사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배치하고 포괄적 표현 내지 글자 수 축소를 위해 기사 제목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편집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고, (3) 네이버가 자체 취재인력 없이 제휴 언론사들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기사를 게시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언론사들이 통신사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자신이 생산한 기사와 동등하게 게재하는 것과 비슷하므로 유사 취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네이버는 기사의 단순 전달자나 매개자가 아니라 ‘취재, 편집, 배포’라는 언론의 3가지 핵심기능을 갖춘 언론매체로서, 네이버가 다른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아 메인화면의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배치한 명예훼손적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은 이후 판결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자살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온라인 이용자들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해 포털이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2008년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등 포털사업자들이 원고와 관련된 기사에 제목을 붙이고 기사의 게재 여부, 위치 및 기간 등을 정하는 ‘유사 편집행위’를 하였으므로 언론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⁸⁾ 2009년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포털의 언론 해당여부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포털이 뉴스 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그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이나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다.⁹⁾ 따라서 포털이 피해자로부터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물론 직접적인 삭제 요구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으며 기술적, 경제적으로도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하다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추후 차단할 주의의무가 발생하므로 상당한 기간 내 그러한 삭제 등의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이 있은 후 네이버는 메인 화면에 배치되는 기사 편집 방침을 대폭 수정하였다. 2009년 1월 네이버는 ‘뉴스 캐스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각의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기사를

8)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9) 대법원 2009. 4. 15. 선고 2008다53812 판결.

메인화면의 언론사별 편집박스에 배치하였다. 2013년 4월에는 ‘뉴스 스탠드’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이용자가 ‘마이 뉴스’를 설정하면 선택된 언론사의 주요 뉴스가 먼저 노출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설정한 ‘마이 뉴스’가 없는 경우에는 주요 언론사들의 로고가 우선 노출되며 기사보기 버튼을 눌러야만 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4년 네이버는 뉴스 클러스터링 방식도 도입하여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선별 및 배치를 시도



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5년 루빅스 알고리즘을 도입한 이후에는 레이아웃상 글자 수 축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모바일 다음에 게시하는 뉴스의 제목을 극히 제한적으로 변경하고 있다.¹⁰⁾

이처럼 에디터가 개입하지 않고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뉴스가 선별, 배치되는 경우의 포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이 판단한 바가 없다. 포털로서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음을 이유로 더 이상 편집 활동이 없으니 언론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구성에는 포털사업자의 가치기준이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수하게 객관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포털이 알고리즘의 사용만을 근거로 기사의 배포나 발행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뉴스 포털의 책임에 대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최근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한 포털의 책임에 대해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첫 번째 판결은 2015년 6월 16일 내려진 *Delfi v. Estonia* 판결¹¹⁾이며, 두 번째 판결은 2016년 2월 2일에 내려진 *MTE and Index.hu Zrt v.*

10) 카카오. 2015. 9. 9. "다음카카오의 뉴스 콘텐츠 노출방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http://blog.kakaocorp.co.kr/408>(검색일: 2016. 3. 6.)

11) *Delfi v. Estonia*, June 16, 2015, Application no. 64569/09. 이하 *Delfi* 판결.

Hungary 판결¹²⁾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대재판부(Grand Chamber)¹³⁾에서 판결한 Delfi 사건은 2006년 1월 24일 에스토니아의 메이저 뉴스 포털인 Delfi의 웹사이트에서 발행된 SLK 선박회사를 비판하는 기사의 하단에 선박회사 대주주인 “L”에 대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댓글(가령 “L을 꼬챙이로 찌러버리자” 등의 댓글)이 덧붙여지면서 시작되었다. 기사와 댓글이 온라인에 발행된 지 6주 후, L의 변호사는 특히 공격적인 댓글 20개의 삭제를 요청하였고 Delfi는 삭제 요청이 있었던 날 그 댓글들을 온라인상에서 바로 지웠다. 그러나 L은 Delfi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년 6월 에스토니아 대법원은 Delfi가 불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Delfi의 패소를 확정하였다. Delfi는 이러한 에스토니아 법원의 판결이 유럽인권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10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Delfi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뉴스 포털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뉴스 플랫폼의 경우, 혐오표현(hate speech)이나 즉각적 위협을 초래할 표현이 플랫폼에 게시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표현들은 암시적이거나 은유적인 것이 아닌, 즉각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들이었는데 이렇게 위험한 표현들을 걸러내지 못하여 6주간 온라인에서 게시되도록 한 것은 Delfi 플랫폼의 필터링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해 통지를 받고 Delfi가 이를 즉각적으로 삭제한 것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Delfi는 댓글로 인해 인격권 침해를 당한 L에게 350 유로(한화 약 47만 원)를 배상하라”는 에스토니아 법원의 판결이 Delfi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Delfi 판결은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상업적 목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에만 적용이 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 또는 취미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나 블로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법원이 문제 삼은 표현은 명백하게 위법한 표

12) MTE(Magyarországi Tartalomszolgáltatók Egyesülete) and Index.hu Zrt v. Hungary, February 2, 2016, Application no. 22947/13. 이하 MTE 판결.

13) Grand chamber는 기존 선례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판단할 때, 선례 발전이나 선례 확립을 위한 원칙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이슈에 관한 사건일 때, 중요한 이슈에 관한 사건일 때, 관련 국가에 대한 함의가 큰 'high-profile' 사건을 다룰 때 등에 한하여 소집된다. ECHR, "Practice of the Grand Chamber Panel", http://www.echr.coe.int/Documents/Note_GC_ENG.pdf(검색일: 2016. 3. 6.)

현 즉 혐오표현이나 폭력행위를 자극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온라인상의 위법한 표현 전반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뉴스 포털의 법적 책임은 2016년 2월 MTE 판결에서 또다시 다루어졌다. 유럽인권재판소 제4부(Fourth Section)는 헝가리의 메이저 뉴스 포털회사인 Index.hu Zrt와 인터넷 자율심의기구인 MTE가 이용자 댓글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0년 MTE의 웹사이트와 Index.hu의 뉴스 포털이 어느 부동산 회사들의 기만적인 광고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신자, 익명의 이용자들이 그 회사들은 “교활(sly)”하며 “쓰레기(rubbish)”라는 등의 코멘트를 달면서 시작되었다. 부동산 회사들은 포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지 않고 헝가리 법원에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MTE와 뉴스 포털은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문제가 된 표현을 바로 삭제하였다. 그러나 헝가리 법원은 이용자들의 댓글이 민법상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MTE와 뉴스 포털은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원고의 소송비용을 포함한 제반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뉴스 포털과 MTE는 헝가리 법원의 판결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Delfi 판결을 언급하면서 인터넷 뉴스 포털은 이용자들이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무와 책임(duties and responsibilities)’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의무와 책임은 ‘전통적 발행인’의 책임과는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당해 MTE 사건은 Delfi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Delfi 사건에서는 혐오표현과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으나 MTE 사건은 단순히 공격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문제 삼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MTE 사건은 혐오표현이나 폭력을 유발하는 표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기존의 선례를 토대로 다섯 가지 판단기준에 의거해 뉴스 포털의 책임여부를 심사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첫 번째 판단기준은 ‘문제가 된 표현의 맥락과 내용(context and content of the impugned comments)’이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문제가 된 댓글들이 부동산 회사의 비윤리적인 사업 방식을 비판하는 공익적 내용이었으며, 그 댓글들처럼 저속하고 공격적인 표현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흔한 커뮤니케이션(common communication)’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표현의 맥락과 내용을 검토했을 때 문제가 된 표현의 부정적 영향력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판단기준은 ‘표현 작성자의 책임(liability of the authors of the comments)’이었다. 앞서 헝가리 법원은 익명의 글 작성자들의 신원을 밝혀낼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으며, 표현의 배포자인 포털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포털 사업자들이 명예훼손적 표현을 ‘배포하였다(disseminated)’는 점을 수궁하더라도 포털 사업자



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용자들이 포스팅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업자의 행위를 ‘저널리즘 행위(journalistic activity)’로 보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타인에 의해 작성된 명예훼손적 표현을 배포한 것에 대해 포털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은 “명예훼손적 발언을 인터뷰하여 이를 전파한 저널리스트를 처벌하는 것은 공익적 사안에 대한 토론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언론의 역할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선례¹⁴⁾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처럼 명예훼손적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처벌하는 것과 명예훼손적 발언을 배포한 포털을 처벌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유사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세 번째 판단기준은 ‘포털이 행한 조치와 피해자의 행동(measures taken by the applicants and the conduct of the injured party)’으로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뉴스 포털과 MTE가 이용자들의 위법한 표현을 금지하는 경고문이나 계약조건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헝가리 법원은 포털 사업자가 필터링 되지 않은 표현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이용자들의

14) Jersild v. Denmark, September 23, 1994, Application No. 15890/89 등 일련의 선례 참조.

법 위반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헝가리 법원의 견해는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보낼 권리(freedom of the right to impart information on the Internet)’를 제한하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문제가 된 표현의 삭제를 요청하지 않고 바로 재판을 청구했다는 점도 포털의 책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판단기준은 ‘피해자에 대한 표현의 영향(consequences of the comments for the injured party)’이다. 당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었으며, 그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는 이미 공론화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온라인상의 비판적 댓글들이 다른 소비자들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신청인(포털)에 대한 영향(consequences for the applicants)’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포털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시키는데 있어서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Delfi 판결에서 언급되었듯이 ‘통지 후 삭제 시스템(notice and take-down system)’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적절한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다만 뉴스 포털들은 혐오표현이나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표현처럼 명백히 불법적인 표현에 대해 ‘통지를 받았을 때는 물론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결국 이러한 다섯 가지 판단기준을 통해 유럽인권재판소는 뉴스 포털에게 댓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책임을 인정한 헝가리 법원의 판결은 포털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유럽인권재판소의 Delfi와 MTE 판결은 뉴스 포털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책임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유럽인권재판소가 ‘통지 후 삭제 시스템’이 포털 사업자들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기준으로서 적절하다고 인정한 점은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뉴스 포털의 법적 책임의 판단기준을 고민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MTE 판결은 혐오표현이나 폭력을 초래하는 표현 외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포털이 문제가 된 댓글이나 표현을 신속하게 삭제한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가 MTE 판결에서 혐오표현이나 폭력을 초래하는 표현에 대해 ‘통지가 있을 때는 물론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도 포털 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혐오표현이나 폭력을 초래하는 표현인지 여부는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법률 전문가가 아닌 포털 사업자들이 이를 미리 판단하고 삭제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이는 포털에 의한 과도한 게시물 삭제나 검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와 우리 법원의 판례를 비교해볼 때, 대법원은 포털이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존재함을 정황상 알 수 있었다면 삭제 요청이 없었더라도 포털에게 삭제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반해, 유럽인권재판소는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이 아닌 혐오표현이나 폭력을 초래하는 표현으로 한정하여 요청 없는 삭제의무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도 뉴스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설령 포털의 뉴스 배치에 알고리즘이 개입되었더라도 판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알고리즘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의 이데올로기와 뉴스 선별에 대한 가치가 담겨져 있으므로 알고리즘은 가치중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¹⁵⁾ 결국 사람의 손을 거치든 알고리즘을 거치든 뉴스를 선별하고 배치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행위는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할 때 그 사업자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느냐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적절한 정도의 책임을 부담시켜 온라인 공론장이 민주적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판단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5) 오세욱·이재현, 2013, “소프트웨어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분석: 행위자 네트워크 관점”, 『언론과 사회』 제21-1호, 152쪽.

이용자는 저널리스트? MCN의 급부상과 미디어 리터러시

김균수 ·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MCN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전통적인 이용자 보호, 디지털 미디어 등장 이후 강조되어 온 콘텐츠 생산 능력과 함께 생산자와 이용자가 함께 콘텐츠를 공유하는 상호작용에 기반한 ‘멀티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형태를 필요로 한다.

최근 콘텐츠 제작과 유통, 소비의 흐름과 특성은 따라잡기 버거울 정도로 급변 중이다. 기존 미디어의 기능과 역할을 작은 디바이스에 고스란히 옮겨놓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단말기의 웹 또는 앱을 클릭하여 손쉽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성과 개방성이라는 모바일 기기의 특성은 콘텐츠 이용 행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모바일 환경에 잘 부합하는 콘텐츠에 대한 필요와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를 몇 가지 주요 키워드로 추려본다면 사실상 ‘모바일’, ‘소셜 네트워킹’, ‘동영상’의 융합과 조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하다. 이들의 핵심요소들을 어떻게 연결 지어 어떠한 형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방위적 경쟁과 혁신의 실험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의 본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국내 미디어 업계를 뜨겁게 달군 핵심 키워드 MCN은 이러한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의 선봉에 있다. 멀티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의 약어 MCN은 유튜브(Youtube) 등 인터넷을 무대로 활동하는 개인 콘텐츠 제작자(이들은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를 관리하는 일종의 매니지먼트 기업을 의미한다. 일반인들에게는 개인 제작 콘텐츠 그 자체로 치환되어 ‘오해’ 되기도 한다.

MCN의 원천, UCC

MCN을 통해 관리되거나 제공되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개인 창작 콘텐츠의 속성에 기초한다. 인터넷의 발달이 콘텐츠 생태계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1인 제작자'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는 UCC(User Created Content) 확산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전문적인 콘텐츠 제작자가 아닌 일반 개인 창작자가 등장하면서 비디오(video)를 통해 블로그(blog) 활동을 하는 '블로거(Vlogger)'가 개인 동영상 콘텐츠 제작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고,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는 이들에게 주요 활동 무대를 제공하면서 함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국내 서비스인 아프리카TV에는 평균 5천개 이상의 개인방송 채널이 열린다. 대도서관, 양명, 김이브 등은 온라인 동영상계 최고의 스타이다. 또한 스타 BJ가 등장하고 웹 드라마 등이 부상하면서 일반인뿐 아니라 기존 미디어의 콘텐츠 전문가들이 모여 적은 예산으로 개인 창작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¹⁾

최근 제작되고 있는 개인 창작 콘텐츠들의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일반인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작자와 이용자의 실시간 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콘텐츠 양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인 제작자들이 순수한 의도로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좋아해주는 이용자들을 만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UCC는 콘텐츠 생산자와 이용자 간 격의 없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이 콘텐츠의 주요한 몫을 차지한다.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 생산자에 버금가는 몰입과 효능감,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²⁾

또한, 개인 창작 콘텐츠는 다양성, 자유로움, 편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속성이 강하다. 개인 창작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과 스토리를 무기로 이용자와 소통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게임 중계, 먹방, 공방(공부하는 방송), 키즈, 뷰티 등 기존 방송에서 다루지 않던 소재와 표현 양식이 담긴다. 그야말로 일상적인 경험으로 공감을 이끌어 내거나 기존 방송에서 관심을 두지 못했던 좁은 틈새를 찾아내기도 하고 독창적인 아이템으로 흥미를 끈다. 그 내용이나 유형은 분류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장르의 혼성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1) 송진 · 이영주, 2015, "방송영상 웹콘텐츠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보고서』, 29-30쪽.

2) 이수영 · 현대원 · 좌영녀, 2012, "UCC 이용 행태에 따른 차별적 미디어 경험", 『한국방송학보』 제26권 2호, 122-166쪽.

MCN의 등장은 UCC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개인 창작자가 만든 동영상이 인기를 얻으면서 개인 채널을 모아 광고를 붙여 수익을 얻는 MCN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콘텐츠 제작 장비와 서비스 가격이 급락하면서 기존 방송, 영화 품질에 버금가는 개인 창작 콘텐츠도 많아졌다. 개인 창작자들을 발굴해 이들의 콘텐츠를 배급하는 MCN과 소셜 크리에이터를 관리해 상업적으로 성공시키는 메커니즘의 등장은 UCC의 질적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MCN은 크리에이터들이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저작권 관리, 유통, 수익 창출 등 전반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해준다. 이는 프로그램 기획, 파트너 관리, 디지털 저작권 관리, 수익 창출·판매 및 잠재고객 개발 등의 영역에서 콘텐츠 제작자를 지원하는 에이전시로서 연예기획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³⁾

자생적 중소기업체들이 주도했던 MCN 시장을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MCN의 산업적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컨설팅업체 SNL Kagan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MCN의 원조 활동 무대인 유튜브의 상위 100개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억 명에 이른다.⁴⁾ 대표적으로 스웨덴 출신의 게임 중계자 ‘퓨디파이(PewDiePie)’의 유튜브 채널은 누적 재생 수 100억 건, 구독자 수 4천만 명으로 연간 1,200만 달러의 수입을 얻고 있다. 미국 10대에게 인기 있는 인물 상위 10위 중 8명이 유튜브 스타라는 조사가 제시되기도 했다.⁵⁾

국내에서도 MCN은 확장 일로다. 아프리카 TV의 게임 BJ ‘로이조’는 누적 시청자수 8억 8천만 명을 기록했다.⁶⁾ ‘대도서관’, ‘양띵’, ‘썸님’은 TV 앞을 떠난 청소년들에게 인기 절정이다. 게임 해설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인기를 얻은 대도서관의 채널 구독자수는 100만 명 정도인데, 광고 수익뿐 아니라 외부 강연과 특정 상품 마케팅을 위해 제작되는 동영상 제작 수익 등을 감안하면 대도서관의 월 수익은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⁷⁾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MCN은 100여 개에 이른다. 킬러 콘텐츠 원천 확보에 목마른 방송사들이 뛰어들더니 이제 최고 아이돌스타를 보유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올해 초에는 50여 개 사업체가 참여한 MCN 협회도 발족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명

3) 『머니위크』, 2015. 8. 5. 정채희, “1인 미디어의 산실’ 아시나요.”,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5073016498091013&outlink=1>(검색일: 2016. 3. 4.)

4) SNL Kagan, 2015. 11. 12. “Top 100 YouTube channels near 1 billion subscribers.”

5) 『Variety』, 2015. 7. 23. Susanne Ault, “Digital star popularity grows versus mainstream celebrities”, <http://variety.com/2015/digital/news/youtubers-teen-survey-ksi-pewdiepie-1201544882/>(검색일: 2016. 3. 4.)

6) 『매경이코노미』, 2016. 1. 25. 강승태·류지민, “크리에이터의 세계-K뷰티·게임·엔터까지 한류확산 전도사 월수입 1억 거뜬.”, <http://news.mk.co.kr/newsRead.php?no=67495&year=2016>(검색일: 2016. 3. 4.)

7) 『동아일보』, 2016. 1. 21. 고미석, “1인 미디어의 신세계”, <http://news.donga.com/3/all/20160121/76033559/1>(검색일: 2016. 3. 4.)

확한 수익모델이나 안정적 수익원이 보이지는 않지만 몇몇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다각도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수많은 1인 창작자가 MCN을 통해 동영상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아직 소수의 인기 창작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용자도 10~30대의 젊은 세대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MCN 콘텐츠의 특징이자 향후 성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국내 MCN 사업은 CJ E&M과 같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KBS, MBC와 같은 방송사, SKT와 같은 통신사들도 가세하고 있고, 트레저헌터 등 전문 독립 MCN도 본격적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MCN은 새로운 성격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이용자들로 하여금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한편, 기존 미디어 기업과는 달리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맺는 등 콘텐츠 유통 창구를 확장하는데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로 광고 수익에 의존했던 MCN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을 심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MCN 콘텐츠의 가능성을 간파한 기업들은 MCN을 통해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로 연결시키는 콜라보레이션을 확대 중이다. 이러한 콘텐츠 비즈니스는 국내를 넘어 중국과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뉴스 · 정보 MCN 콘텐츠의 특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제작 콘텐츠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 혹은 보도 부문도 MCN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지상파 DMB 채널 QBS는 '60초 모바일뉴스' 서비스를 개시하여 뉴스 크리에이터를 모집하고 이들이 뉴스 기획과 진행을 겸한 1인 창작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존 언론사의 실험도 가세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올해 상반기 중 '뉴스뱅(NewsBang)'이라는 서비스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뉴스뱅은 1인 콘텐츠 제작자와 제휴를 맺고 이들의 콘텐츠를 뉴스뱅이라는 플랫폼으로 모아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들의 콘텐츠 생산과 업로드, 유통이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MCN 모델이다.⁸⁾

뉴스 MCN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까닭에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뉴스 관련 MCN 콘텐츠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지금까지 인터넷 기반의 UCC나 개인방송이 데스크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향후 MCN이 주도하는 개인 창작자 콘텐

8) 『미디어오늘』, 2016. 2. 12. 차현아, "취재기자가 편집·조판까지? 한겨레 디지털 실험 성공할까",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958>(검색일: 2016. 3. 4.)

츠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의 형태로 구현될 개연성이 크다. 전문화된 취재 시스템 바깥에 놓인 개인 창작자가 MCN을 통해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는 대략 1) 기존 팟캐스트 등을 통해 생산되는 뉴스·정보 콘텐츠 양식과 유사한 형태이거나, 2)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뉴스·정보 서비스 모델과 유사한 콘텐츠, 3)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에 기반한 콘텐츠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⁹⁾

또, 내용적 측면에서 MCN 뉴스 콘텐츠는 새로운 소식의 전달보다는 이용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요약, 정리해주는 해설형 콘텐츠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크리에이터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취재 과정을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콘텐츠 생산 서비스도 시도될 수 있다.¹⁰⁾

한편,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스낵을 즐기듯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주로 소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고 재미있게 정리해 제시하는 ‘리스트클(listicle, list+article)’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MCN 뉴스·정보 콘텐츠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용 가능하면서도 한 눈에 속 들어오는 뉴스와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버즈피드나 피키캐스트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들도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 역시 새로운 뉴스·정보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크다. 모바일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는 미어캣(Meerkat), 페리스코프(Periscope) 등을 시작으로 최근 페이스북이 가세하면서 그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다. 모바일 동영상 생중계 서비스는 기존 방송사가 거대한 중계차와 카메라를 동원해 만들어내던 생방송을 일반 개인이 별다른 장비나 기술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대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영상의 화질이나 콘텐츠의 구성 품질에서는 기존 방송과 차이가 있겠지만, 실시간 콘텐츠가 갖는 현장감 및 속보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



9) 물론, 뉴스·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 및 형식이 녹아 있는 무정형의 콘텐츠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10) 이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자로부터 조달해 후원자와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는 뉴스 펀딩도 하나의 제작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화제와 이슈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동시에 아주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생생한 동영상상을 통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접할 수 있다.¹¹⁾

여기에 MCN의 상업적 메커니즘이 결합되어 그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기존 언론을 위협하는 대안적 존재가 될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 2014년 실시된 개인방송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¹²⁾ 개인방송의 시청 이유로는 ‘여가 시간이 있을 때 심심풀이’라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았지만, ‘대중매체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가 있어서’라는 응답도 17%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 조사에서 개인방송 가운데 가장 많이 시청하는 장르는 ‘스포츠’로 나타났는데, ‘시사/현장/정치’도 비교적 높은 순위인 4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기반 매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려왔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신문과 방송 등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 SNS를 통한 개인의 표현 행위도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¹³⁾ 또, 블로그·SNS 등 인터넷상의 다양한 표현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활발한 토론과 반론을 벌이는 개인의 표현행위는 언론 매체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을 전달하여 알 권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¹⁴⁾ MCN 콘텐츠를 언론매체와 같은 공공·사회적인 표현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는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겠으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MCN 뉴스 콘텐츠도 언론매체로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새로운 콘텐츠 공급원으로서 MCN의 부상과 리터러시 쟁점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MCN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만큼이나 MCN을 통해 무한대의 스펙트럼으로 담겨질 콘텐츠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이러한 우려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소위 ‘전문가’들에 의한 콘텐츠 생산이 이용자로 확대되던 시점부터 지속되고 있다. 개인 창작 콘텐츠는 기존 방송 콘텐츠와 달리 내용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먹방, 게임, 음악, 스포츠, 취미, 교육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용자의 수나 인기에 비례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개인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독특한 소재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11) 송진, 2015, “SNS+생방송’의 새로운 가능성: 모바일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방송과 기술』 6월호.

1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온라인 개인방송 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13)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

14) 이승선, 2015, “신생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뉴스소비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 2015년 봄호.

높아진다. 기존 미디어에 적용되는 제약이나 한계가 사라진 인터넷 공간에서는 상업적 욕구가 지나칠 경우, 엽기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제작될 가능성도 커진다. 선정적인 노출과 언어 사용, 폭력적이거나 가학적 내용 등 소위 막장 콘텐츠 생산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여기에 MCN의 메커니즘이 결합될 경우, 상업적 부작용이 증대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현재 MCN이 체계적인 수익모델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곧 MCN이 수익발생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내의 경우 대기업 주도로 생태계가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수익성 혹은 사업화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해외 MCN의 초기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공유하는 광고가 주요 수익원이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MCN 플랫폼에서의 광고 수익은 미미하고 주로 브랜드드 콘텐츠(Branded content)로 수익을 도모하고 있다.¹⁵⁾ 이는 콘텐츠에 직접적으로 상업적 메시지가 포함되는 형태가 증가함을 뜻하는 것으로 콘텐츠 외부에 붙이는 광고와 수익모델에서 차이를 보일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영역 전반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변화로 볼 수 있다. 물론 기존에도 간접광고나 협찬 등 유사한 형태의 수익모델이 존재했지만, 이것이 MCN이 가진 내용에 제한이 없는 개인 창작 콘텐츠를 통해 보다 본격화·직접화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의 증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뉴스·정보 콘텐츠의 경우, 그 부작용은 다른 장르에 비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MCN 시대, 미디어 리터러시의 과제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MCN 환경은 이용자 보호, 이용자의 창작 능력 제고, 나아가 이용자 참여와 비판 능력 제고 관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미디어 변화와 그에 따른 이용행태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체계를 갖춰 왔다. 읽고 쓰고 이해하는 고전 리터러시(classic literacy)에서 전자 미디어를 이해하는 시청각 리터러시(audiovisual literacy), 컴퓨터 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그리고 앞의 모든 단계의 리터러시를 포함할 뿐 아니라 여러 매체의 융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순으로 변화해왔다.¹⁶⁾

15) 『블로터』, 2015. 9. 16. 권혜미, "[MCN] 재미만으론 배고파...4색 수익모델", <http://www.bloter.net/archives/238669>(검색일: 2016. 3. 4.), 『매경이코노미』, 2016. 1. 25. 강승태, "1인 방송이 뜬다 MCN 사업 각광", <http://news.mk.co.kr/newsRead.php?no=67496&year=2016>(검색일: 2016. 3. 4.)

16) 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 2010, "Study on the current trends and approaches to media literacy in Europe", Commissioned by European Commission.

최근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며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능력을 강조한다. 유네스코에서 2011년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과과정은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¹⁷⁾와 인포메이션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¹⁸⁾ 영역을 합쳐서 민주적 토론과 사회 참여를 위해 정보 및 미디어를 이해하고, 정보의 출처와 미디어의 텍스트를 평가할 수 있으며, 미디어와 정보를 사용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⁹⁾ 읽고 쓰는 능력, 개인의 미디어 활용 능력 등의 특정²⁰⁾ 등 다양한 리터러시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리터러시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MCN 환경에서도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 대상자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도록 그 세부 내용을 변화, 변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미디어 이용 및 제작에 참여하고, 나아가 이러한 활동이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가 미디어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MCN 시대에는 단순 이용자나 생산주체로서의 이용자 관점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매개로 연결되는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콘텐츠가 무정형의 역동적이고 유기체적인 형태를 띠면서 구성되는 과정까지도 리터러시의 중요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MCN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전통적인 이용자 보호, 디지털 미디어 등장 이후 강조되어 온 콘텐츠 생산 능력과 함께 생산자와 이용자가 함께 콘텐츠를 공유하는 상호작용에 기반한 ‘멀티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형태를 필요로 한다. 단순히 미디어 이용 기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토대로 활발해진 이용자의 콘텐츠 제작, 더 나아가 참여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소셜 미디어 등장 이후, 소셜 미디어가 그 이전의 디지털 미디어에 적용되던 리터러

17) 미디어의 기능을 이해하고, 해당 기능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평가하고, 자신의 표현을 위해 이성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18) 정보 접근과 평가, 정보의 윤리적 사용을 강조한다.

19) Alagaran II, J., 2013,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as a Key.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and Intercultural Dialogue.", MILID Yearbook 2013, pp. 405~413.

20) Grizzle, A., 2015, "Measuring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ILID Yearbook 2015, pp. 107~129.

시와 어떠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다. 개인 창작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MCN 시대의 리터러시 역시 일정부분 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¹⁾ 첫째, 초기 인터넷의 커뮤니티 지향에서 개인 지향성의 연결이 이루어진다. 둘째, 지식에 대한 접근에 있어 인맥을 통한 접근이 중요해진다. 즉, 지식을 찾는 방법보다도 지식의 소유자와의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셋째,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던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실명성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강화된다.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은 현실과 마찬가지로의 실재감을 가진다. 넷째, 개인이 자신의 콘텐츠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MCN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콘텐츠 생산을 통한 자기표현뿐 아니라, 타인의 콘텐츠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공유의 방식, 콘텐츠 전달 및 유통에 대한 이해까지 포괄해야 함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라인골드(Rheingold)가 제시했던 협력(collaboration), 비판적 소비(critical consumption)²²⁾의 개념은 MCN 시대에 매우 유용한 리터러시 항목으로 적용 가능하다. MCN 시대의 이용자는 콘텐츠의 생산, 공유,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MCN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 창작 콘텐츠에 대해 무엇(누구)을 신뢰하고, 이들의 콘텐츠는 어떠한 사회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전달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능력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MCN이라는 상업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 속에서 전달되는 개인 콘텐츠들이 가질 수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인식, 선별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구매하는 등 현명한 자기 판단과 제어 능력이 필요하다. 요컨대, MCN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접근(access)’, ‘창작 및 창조적 협력(creation & creative collaboration)’, ‘비판적 소비(critical consumption)’ 개념에 방점을 두고 체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MCN 관련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문화적 요소 및 시민성과도 결합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활약에 기여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점에서 리블(Ribble)의 9가지 디지털 시민성 요소는 이와 관련하여 함의하는 바가 크다.²³⁾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중심으로 개인 지향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공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에티켓과 참여의 방식, 그리고 그 활동에 연결되는 메시지의 사회적 책임(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사기 등)이 숙지되어야 한다. 특히, SNS나 게시판 댓글에 올린 표현으로 인해 명예훼손이

21) 김양은, 2015, “소셜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22) Rheingold, H., 2012, *Net Smart; How to thrive online* (MIT Press).

23) Ribble, M., 2015, *Digital Citizenship in School(3rd edition)*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나 모욕죄 등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이용자 간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²⁴⁾은 개인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전제하는 MCN 시대에 사전적 차원에서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직 내 시스템 구축과 개인 콘텐츠 제작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 인식 강화가 매우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MCN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교환, 상거래 등의 본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테크놀로지의 활용 능력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 교환과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로부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법적인 차원의 자유와 권리 책임, 안전과 보안,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표 1〉 디지털 시민성의 9가지 요소

범주	세부요소 설명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에티켓	행위 또는 절차와 관련한 기준
	접근	디지털을 통한 사회적 참여
	법	행위 및 활동에 대한 책임
스스로에 대한 교육과 타인과의 연결	사용능력	테크놀로지에 대한 학습 및 교육, 테크놀로지의 활용
	커뮤니케이션	디지털을 통한 정보의 교환
	상거래	디지털을 통한 구매와 판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보호	권리 및 책임	디지털 세상 모두에게 확대된 자유
	안전(보안)	안전을 보장하는 전자적 예방
	건강 및 삶의 질	디지털 세계에서의 육체적, 심리적 웰빙

(출처 : <http://digitalcitizenship.org>, 앞의 김양은(2015)의 표를 토대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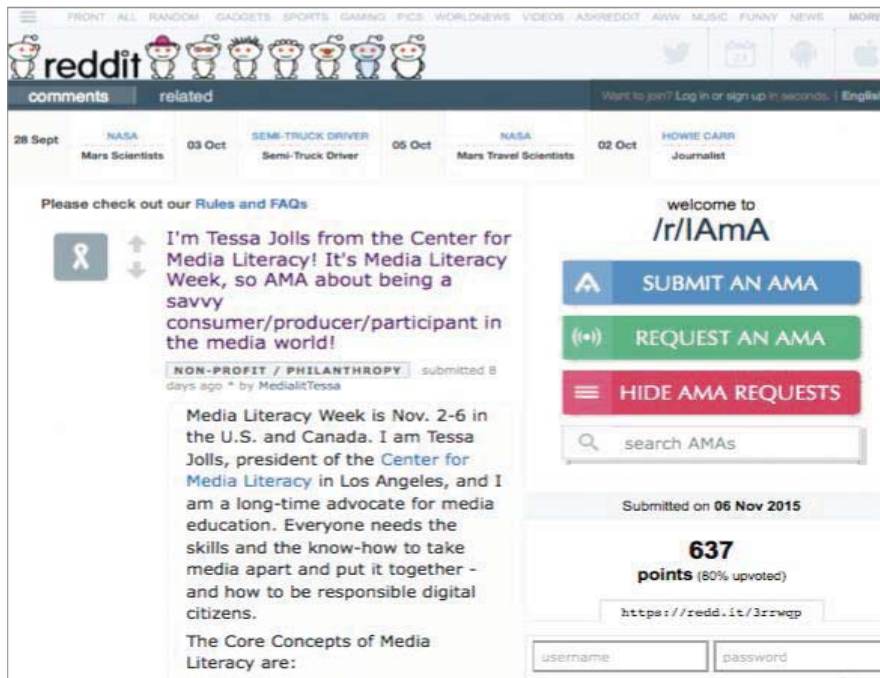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새로운 미디어를 쉽게 혹은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는 청소년과 상대적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되었다. 하지만, MCN이 활성화될 경우 학부모 및 미디어 교육 종사자 등을 포함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 연령대의 미디어 이용자들이 모바일

24) 『주간한국』, 2015. 8. 1. 윤소영, “대한민국은 ‘악플공화국’인가”,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508/dh20150801103445137780.htm>(검색일: 2016. 3. 18.)

Focus on Media 3

디지털 퍼스트 시대 뉴스의 중심, 이용자

을 통해 개인 창작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성인들에게도 새로운 지식과 관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리터러시의 범위를 넓히고 생애주기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용자들에게 MCN에 대한 이해, 개인 창작 콘텐츠 제작을 위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창작 과정과 최근 미디어 이슈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험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미디어 이용자들이 콘텐츠의 내용과 그와 연계된 사회적 이슈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뉴스 소셜네트워크 레딧(Reddit)의 리터러시 프로그램

참고로 미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센터(Center for Media Literacy)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 포럼(Media Literacy Week Forum)은 콘텐츠 제공자가 실행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겠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뉴스 소셜 네트워크 레딧(reddit)에서 해당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운영 기관에서 전문가가 일대일로 답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⁵⁾ 이러한 교육


25) <http://medialiteracy.youthpress.org/program>(검색일: 2016. 3. 4.)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은 이용자 입장에서 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도 미디어 제작과 유통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를 참고해 MCN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주체와 리터러시 전문 기관이 연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스·정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유러피안 청소년 프레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참고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뉴스 미디어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이 공유하는 콘텐츠가 가진 영향력과 파급력, 관련 법적 이슈 등에 대해 교육한다. 미디어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문화적 미디어 폭력, 비판적 정보 습득 등 다양한 이슈를 담은 워크숍과 강의, 패널 토론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²⁶⁾

맺는 말

개인 창작 콘텐츠는 MCN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정부 육성 신직업군에 포함시켜 크리에이터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콘텐츠 생산 주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무한대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제공되는 개인 콘텐츠를 어떻게 수용하고 향유할 것인지, 그 참여의 역동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 이용 측면에서의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무엇보다 새로운 콘텐츠 환경의 변화는 ‘혼자 소비한다’는 차원을 넘어 ‘나만을 위한 콘텐츠’를 각자 소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디어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르다.²⁷⁾ 이러한 개인적 소비는 개인 단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인과 개인, 개인과 서비스, 서비스와 서비스로 연결되어 또 다른 거대한 연결망을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연결망에 대한 이해는 곧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나아가 그로인해 변화할 세상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다. MCN은 이러한 변화로 가는 길목에 등장한 가속기와도 같다. 이용자 미디어 리터러시의 수준에 따라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그들이 가져올 콘텐츠 세상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26) <http://medialiteracy.youthpress.org/program>(검색일: 2016. 3. 4.)

27) 박주연·전범수, 2010, “국내 미디어 기업의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사례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권 1호, 160-169쪽.



‘제국(帝國)’과 자유

–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장철준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사해석의 자유와 인격 피해

인간이 “해석적 동물”이라면 우리에게 역사란 인식 너머의 존재물이 아니라 텍스트와 사회 문화의 정합적 해석 대상임이 분명하다. 시간을 되돌려 사태를 확인할 능력을 가진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기에 명철과 의지로 기록된 텍스트의 중요성만큼이나 그것을 열심히 읽어 낼 해석자들 또한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다. 이들의 작업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역사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해 옳은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역사의 산물인 헌법이 학문과 예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천명한 이유 또한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과 그 관계를 다루는 작품이나 연구는 사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인간에 대한 윤리적 평가가 뒤따르기도 한다. 이러한 까닭에 평가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감정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즉,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인격과 명예가 손상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인간을 존엄과 가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자유로운 예술과 학문 활동은 때로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으로 다가설 수도 있다. 특히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사실에 대한 해석의 방식과 결론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폭력의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다.

결국 해석적 존재로서 인간이 지니는 능력의 한계가 모든 인격 갈등의 원인이며, 이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법은 모든 해석적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성적 사고의 합리성과 유용성이라는 범위 내로 한정된다. 역사해석의 자유와 인격적 피해가 충돌하여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다면 역사해석의 컨텍스트(context)뿐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법적 갈등의 컨텍스트를 모두 읽어야 하며, 우리의 협력적·자율적 선택에 대한 믿음과 존중의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제국의 위안부』 사태(박유하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작을 둘러싼 법적, 사회적 갈등 양상을 축약하여 칭한다.)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격적 상처와 더불어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역사 갈등 해결의 성숙도를 가늠해보는 시험대라 볼 수 있다.

이제 법정으로 무대가 옮겨진 이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두고 벌어진 법적 갈등에 관한 문제 정도

에 그치지 않는다. 사태 자체가 역사적 실존의 주체로서 엄연히 현실을 공유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들을 객체로 한 담론의 자유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공적, 사적 권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단지 인격권과 학문(표현)의 자유가 어떤 선후관계에 있는지를 법리와 판례에 따라 결론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법적 숙의의 과정에는 다양한 사회적 담론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성적 대화가 교류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원도 손해와 배상액, 죄와 형벌의 종류로 승패를 따지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자유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에게 역사적 희생자의 고통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재정립할 자유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되는지의 문제를 부득불 결정할 때가 되었다. 상처를 담고 있는 사건인 까닭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과정이지만, 이는 식민의 역사를 제대로 걸러 계승하지 못한 우리의 업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국의 자유와 공화국의 자유, 그 흐릿한 경계선이 분명해질 의미 있는 작업임에 틀림없다.

『제국의 위안부』 사태와 2016년 대한민국

2013년 『제국의 위안부』가 출간된 직후, 위안부 할머니들은 위안부를 지칭하는 표현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출판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5년 2월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채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¹⁾ 그 후 1년여가 지난 2016년 1월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저자인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총 9,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선고하였고,²⁾ 그가 재직하는 세종대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인용하였다. 민사 재판과는 별도로 검찰은 2015년 11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박유하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에 박 교수는 사법부의 학문의 자유 수호에 대한 의지를 불신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법정 밖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다. 우선 박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비하했다는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학계와 문화계, 언론계 등의 지식인 194명은 검찰의 기소조치가 학문의 자유를 위배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³⁾ 당사자인 박유하 교수 또한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삭제된 책을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하고 동시에 법원 판결 및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장을 수차례

1) 서울동부지법 2015. 2. 17. 선고 2014카합10095 판결.

2) 서울동부지법 2016. 1. 13. 선고 2014가합104726 판결.

3) 이들의 논지에 대한 소개는 『한겨레』, 2015. 12. 2. A6면, 강희철·김기성, “박유하 책 문제 많지만, 기소는 사상·학문 자유 옥죄다” 등 참조.



표명하였다.⁴⁾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문적 논의 속의 해결”을 주장하며 학문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들어 박 교수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의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다.⁵⁾

이들 소송의 법적 쟁점은 『제국의 위안부』에 기술된 허위사실(“자발적 매춘부” 등의 표현들)에 의하여 소송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가 등이다.⁶⁾ 전자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할머니들의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보았고, 후자의 형사소송은 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소송 자체가 국가의 형벌권을 통한 학문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자인 박유하 교수는 시종일관 자신의 저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위안부 할머니를 “자발적 매춘부”라 지칭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대부분 “기초적인 독해력 부족이나 의도적인 왜곡이 만든 것”이라 주장한다.⁷⁾ 다시 말해 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읽은 독자들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명예훼손으로 잘못 받아들여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한·일 관계를 반목으로부터 화해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그는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운동단체(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하 ‘정대협’)가 강경한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이념적인 접근방법만을 택해 한·일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대협의 활동배경에는 소녀상으로 대표되는 일제 강점기 위안부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연구에 의하면 이는 사회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한 잘못된 이미지 조작의 결과라는 것이다.⁸⁾ 즉, 아무것도 모른 채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어린 소녀들은 당시 위안부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으며, 많은 수가 일본군이 아닌 조선인 민간 “업자”들에 의하여 동원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들의 모습을 성노예로 규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으며 이 불편한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고

4) 2015.12.2. 검찰기소항의 기자회견 ; 박유하, 2015, 『제국의 위안부: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 제2판(34곳 삭제판) 서문 등.

5) 이들의 논지에 대한 소개는 『프레시안』, 2015. 12. 9. 이재호, “박유하, ‘조선’여성이 처한 식민지 구조 삭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708&ref=nav_search(검색일: 2016. 3. 15.) 등 참조.

6)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법률상 근거는 민법 제750조 등의 규정이며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307조 등이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7) 앞의 박유하(2015) 서문 iii.

8)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를 비롯, 많은 매체를 통해 자신의 연구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주된 비판 대상은 정대협으로 대표되는 이념 성향의 운동단체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예컨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기자회견 질의응답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HO1CtMmzlf8>) 등.

의로 감추어져 왔고 결국 이러한 이유로 위안부를 매개로 한 우리의 반일 감정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연구와 주장이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을 중심으로 발표된 바 있으나,⁹⁾ 한시적인 비난과 사과가 이어졌을 뿐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적은 없었다. 아마도 2015년 이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정부의 위안부 협상 타결 등의 관련 이슈가 첨예한 여론 대립을 야기함으로써, 비슷한 시기에 1심 법원 판결이 나온 이 사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주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 기소한 것을 두고 다수의 지식인들이 찬·반 성명을 제출한 점 또한 이례적인 일이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명예감정의 극심한 손상은 물론, 『제국의 위안부』 내용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이 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란이 자신들의 오랜 주장, 즉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실질적 배상이라는 목표 달성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책이 거의 최초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학문 연구의 형태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¹⁰⁾ 박 교수가 이 문제에 오래 천착하여 온 전문가로 학계에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꽤 많은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책의 내용은 헌법상 학문(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외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중심으로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과는 별개로, 법원의 판단이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인격권으로 대표되는 명예권의 보호를 위해 학문(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제한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환원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원리에 의해 표현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국의 위안부』의 주장과 근거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격권 훼손이 용인될 수 있을 만큼 정당한 것인지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적 인물(사실)과 명예훼손 법리

표현의 자유에 대해 특별히 헌법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은 민주 사회를 이루고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 요청 때문이다.¹¹⁾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와 관계된 사안은 이러한 고려

9) 『오마이뉴스』, 2005. 4. 26. 손병관, "이영훈교수 "교과서 속 '위안부 20만'에 찬성 못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62704>(검색일: 2016. 3. 15.) 등.

10) 헌법재판소가 정의하는 '학문의 자유' 대상인 학문이란 "일정한 지식수준을 기반으로 방법론적으로 정돈된 비판적인 성찰을 함으로써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책에서 근거로 인용되는 일본 자료에 대해 그 학문적 수준을 논쟁할 수는 있겠지만, 위 정의의 범주 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1) 특별히 중요한 표현 주체인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1991. 9. 16. 89헌마165). 물론 이러한 태도가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법리인 '이중기준(double standard)' 원칙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실질적으로 채택·적용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인 간에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인격권 혹은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할 경우 판단은 더욱 어렵게 된다. 최근 이러한 충돌 구도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개인의 표현 기회와 욕구가 급증하면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성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명예훼손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¹²⁾ 표현의 자유와 명예라는 법의 사이에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제국의 위안부』 사태는 단순한 의견과 감정표현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학문적 연구 성과를 표현하는 방법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와는 다르다. 이러한 문제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 등에 대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평가나 인상을 뒤집는 새로운 연구나 해석이 내려지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즉, 학술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가 학문의 언어나 예술작품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당사자 및 유족의 명예 혹은 명예감정을 훼손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표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형식적 요소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바로 표현 행위가 사실(fact)을 진술한 것인지 의견(opinion)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사·의견 표명은 사실의 진술보다 더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¹³⁾ 소위 “사상의 자유 시장(marketplace of ideas)”이라 불리는 개념의 핵심, 즉 ‘아이디어’라는 것도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새로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의견 혹은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존중하겠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해석활동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겠다는(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해석은 본질적으로 주관적 성격을 가지며 참여를 전제로 함께 견주고 다투는 과정에서 가치가 매겨진다. 처음부터 ‘틀린’ 해석이란 있을 수 없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한 ‘공론장(public sphere)’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이러한 인식적 토대 위에서 실천된다. 나와 달라 불편한 의견까지 일단 공론장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이성적 토론을 통해 오류를 밝히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미국법에서 “공정한 논평의 법리(fair comment rule)”, “의견 특권론(opinion doctrine)” 등 의견을 넓게 보호하려는 판례 이론이 등장하였던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⁴⁾ 하지만 때로 의견과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인간의 해석은 사실이 그 해석의 전제가 되거나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해석을 명확한 사실로 볼 것인지 의견으로 볼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해석의 바탕

12) 『뉴스1』, 2015.11.25. 윤진희, “‘명예훼손 소송 급증’ 대한민국... 처벌 강화추세에 우려 목소리”, <http://news1.kr/articles/?2495688>(검색일: 2016. 3. 15.)

13) 사실과 의견을 이론적으로 더욱 자세히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자는 “사실 관계의 전달: 그 내용이 인식과 현실 간의 일치 여부로서 진실인가 허위인가가 문제되는 경우”를 말하고, 후자는 “과정이나 상태를 표현행위자의 입장에 따라 판단한 결과: 가치적도에 따른 판단의 표현, 존재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로서 옳고 그름이 문제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한다. 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현암사), 79쪽.

14) 이들 판례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의 박용상(2008), 81-88쪽.

이 되는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해석 또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실 전제에 대한 진실 검증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하지 못해서 이에 기반한 의견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순수한 의견이나 진실한 사실에 바탕을 둔 의견 표현과는 다른 법적 취급을 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¹⁵⁾

사실과 해석 및 의견이 가장 복잡하게 혼재된 분야가 바로 역사를 소재로 한 학문 연구나 예술 작품일 것이다. 사료에 대한 해석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부정확하거나 조작된 사료를 의도적으로 인용하거나 검증 노력을 선행하지 않은 결과물까지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진술 자체가 사실인지 의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혹은 의견을 사실로 일반화한 경우에는 합리적 판단의 결과가 사실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사실 진술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국의 위안부』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도 논쟁적 역사물과 예술 표현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룬 사례가 있었다.¹⁶⁾ 대표적으로 한국방송공사가 2006년 방송한 역사드라마 「서울 1945」 사건을 들 수 있다.¹⁷⁾ 고 장택상 전 국무총리 유족은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고 이승만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작가 및 연출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주된 이유는 드라마의 몇몇 장면에서 위 두 인물이 친일경찰을 동원한 여운형 암살사건의 배후인 것처럼 묘사하였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드라마가 허위 사실을 들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 주장하였고, 검찰 또한 허위사실을 통한 사자의 명예훼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로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은 물론 ... 역사드라마의 창작물로서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사정과 드라마의 주된 제작목적,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아니면 배경인지 여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드라마상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 전개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다소 과장되고 추

15) 미국 연방대법원은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497 U.S. 1 (1990) 판결에서 의견의 부정확한 사실 전제 등에 대해 보호의 폭을 좁히기도 하였다.

16) 예를 들어, 영화 「실미도」의 내용 중 특정 부대에서 복무하였던 군인들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DVD 세트 등을 제작, 판매,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판례(서울고법 2005. 1. 17. 선고 2004라439), 영화 「그때 그 사람들」 내용 중 “특정 장면을 통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고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고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으나, 고인의 역사적 특수성, 위 영화가 다른 사건의 역사적 특수성, 영화라는 표현물이 갖는 특수성, 위 영화의 특수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영화로 인한 고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영화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 명백하지는 않다.” 고 보았던 판례(서울중앙지법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등이 있다.

17)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



측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 합리적 수준의 근거자료와 정황이 존재하는 이상”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허위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다. 나아가 “역사드라마에서 그 소재로 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묘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이미 망인이 된 인물의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드라마를 시청하는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시청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드라마를 통한 역사 해석의 자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였다.

법원은 위 사건의 형사소송에서도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신빙성,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은 물론 역사드라마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사정과 드라마의 주된 제작목적,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배경인지 여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드라마상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 전개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한다.”며 무죄로 판결하였다.

학문(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이제 『제국의 위안부』 사태를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우선 내용의 사실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 책을 학문적 성과로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자 나름의 학문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이끌어 낸 결과물이므로 이 책은 학문의 자유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저자의 의견은 기존 학계의 견해와 일반 시민의 상식과 상당히 다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공론장, 즉 학문적 연구와 토론의 기회를 통해 대화하는 것이다. 더구나 저자인 박유하 교수는 자신의 책에 대한 독자의 오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저자의 의도대로 책의 내용이 읽힐 수 있을 것인지는 공론장에서 비판하고 검증하면 될 것이다. 지식인들이 『제국의 위안부』를 비판하면서도 형사소송으로 처리하기보다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가 있어야겠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소송은 양 당사자들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문 활동의 주체인 저자는 처벌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임하는 형사소송 과정 자체가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실현에 있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사후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 판명될지라도 현재 존재하는 학문적 의견이나 표현은 공론장의 검증을 거칠 수 있게 해야 한다. 형벌권을 통한 국가의 개입은 그 후에 논의되어도 늦지 않다. 오히려 성급한 처벌은 연구의 당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연구 결과에 대해 형사상 유

죄의 명예를 씌우는 순간, 이후의 논의 역시 공정성의 시비가 따르게 될 것이다. 또한 오로지 명예훼손 법리에 의해 판단하게 될 형사소송에서는 책의 가치에 대한 입체적이고 본격적인 검증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인 할머니들에게도 결코 이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명예훼손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일은 개인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다. 박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동안 책의 주된 대상인 할머니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의 금전적 부담 또한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소송에서 『제국의 위안부』의 저술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될 일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었다는 사실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갚아주었을 뿐, 이로 인해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공적 토론의 가치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도서출판 등 금지 가치분결정에 대해서도 학문 및 표현의 자유가 문제될 수 있다. 표현에 대한 허거나 검열을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 범리상 법원의 조치가 지나친 자유의 제한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익은 개인의 명예에 관한 것으로 일단 출판되어 대중에 공개되고 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만약 이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삭제된 표현들이 불법행위로 판단되지 않았다면 다시 온전한 형태로 출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것이다.

이후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삭제된 34개의 표현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였다. 우선 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이 각각 의견과 사실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고, 순수한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진술에 대해서만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했다.¹⁸⁾ 위법성 측면에서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¹⁹⁾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위법성 판단의 전제 조건으로 학문의 자유를 염두에 두고, 학문적 결과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학문의 연구는 ... 그 연구의 자료가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여

18) 그 구체적 표현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기술하지 않겠다. 책 전체의 내용 없이 발췌 평가하는 것이 이 한정된 지면 안에서 수행할 작업은 아니라 판단하였고, 법원에서 삭제 결정이 내려졌던 명예훼손적 표현을 다시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독자인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착취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1천 번이 넘는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할머니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 중 이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위안부에 대한 일반화의 진술도 있다는 생각이다.

19)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등.



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여도 용인되어야 한다.”²⁰⁾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 “학문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2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연구 결과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학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출판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등 그 상당성의 정도를 완화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판단의 구체적 기준으로는 “학문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학문 결과 출판으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범, 그 표현 방법 등 그 학문결과 출판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로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²¹⁾고 전제하였다. 나아가 “학문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험 결과가 잘못되었는데도 이를 사회에 알려서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이는 학문의 자유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²²⁾고 하였다.

판결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진실성 판단에 있어서는 책에서 사용된 지나친 일반화와 단정적 표현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비록 저자의 (사실)주장이 부분적으로 진실로 밝혀지더라도, 그 주장에 반하는 많은 근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저자의 일반화·사실화된 주장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반화로 인해 할머니들의 명예에 피해가 발생한 이상, 이들 표현을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 판결에서는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학문연구결과와 발표보다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인격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민주주의 헌법’이 작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헌법 주체로서의 개인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이상에 부합한다는 법원의 해석을 드러낸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자유와 권리’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민주주의 절차에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²³⁾ 위안부 할머니들은 식민지 시대의 국가 폭력에 의해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20)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도254 판결 등.


2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 등.

22) 대법원 1967. 12. 26. 선고 1967다591 판결.

23) 미국 연방대법원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은 이를 ‘역동적 자유(active liberty)’라 명명하였다. 이는 국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the government)라는 근대적 자유 개념과 별개로,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 공동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ephen Breyer, 2016, 이국운·장철준 역, 『역동적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사회평론아카데미) 참조.

한·일 양국의 방치 속에 일생을 수치심으로 살아왔던 우리 사회의 소수자이다.²⁴⁾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 이후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실상이 드러나기까지 이들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의 자격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최소한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추구하기 위한 민주주의 과정에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소수자에 대한 억압적 표현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자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학문의 자유의 결과라 하여도 혹시 한 치의 예외는 없지 않은지 신중해야 한다. 헌법 해석에 있어서도 소수자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동등한 참여적 주체로서, 그들의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존재감과 애정을 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참여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헌법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헌법 해석이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 받는 인물이나 높은 지위에 올랐던 인물에 관한 것과 소수자에 대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해석이 각각 달라질 수 있겠다. 소위 공적 인물(public figure)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넓게 용인되는 이유는 주로 해당 표현으로 인한 공적 이익이 더 크다는 데 있는데, 민주주의 참여의 관점에서 보아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 본다. 공적 인물의 참여적 자유는 이미 단단히 구축되어 있으므로 웬만한 표현으로는 그것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학문 및 표현의 자유와 명예 등 인격권의 보호는 모두 중요한 가치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가치는 끊임없이 충돌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두 영역의 충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국가 공권력에 의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기본권적 측면의 법적 판단과 학문 영역의 자율적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도 수용할 수 있다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며, 약자와 소수자를 동등한 사회 참여적 구성원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도 필요하다. 『제국의 위안부』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덕목들이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자유가 제국의 자유에 머물러 있는지, 공화국의 자유로 진전되었는지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24) 물론 『제국의 위안부』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참여하여 그리 수치감을 느끼지 못한 이들도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언론의 품격을 해치는 것들

손수호 · 인덕대 교수, 국민일보 객원논설위원

요즘은 일간 신문을 만든다는 게 아주 경이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매 순간 사리분별을 하고, 평가와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건 거의 신의 영역 아닌가 싶은 것이다. 2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28년간 매일 그 일을 했고 기자생활을 그만 둔 지 겨우 3년쯤 지났는데도 지난 일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지금도 그 벅찬 과업을 수행하는 후배들에게 사랑과 격려를 보낸다.

기자에서 교수로 말을 갈아타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나”며 부러움 가득한 눈길을 던진다. 맞다. 열에 일곱은 좋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넓어진 게 가장 매력적이다. 기자의 시간은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교수도 일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시간의 배분과 관리에 주체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기자의 시간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기자에 밀리는 것은 파워드. 경험칙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나의 직전 명함이었던 논설위원과 교수의 명함은 주고받을 때 느끼는 무게가 달랐다. 그것은 세상에 미

치는 영향력을 따져 그럴 것이다. 제도권 언론의 기자가 1만 명 정도, 전국의 교수 숫자는 10만 명에 가까우니 희소성의 가치에서도 뒤질 수밖에 없다.

언론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거리는 여기서 생겨났다. 원래 있던 위치에서 내려와 보니 기자들의 언어는 때때로 힘 있는 집단의 폭력으로 들렸고, ‘취재’와 ‘편집’이라는 고유의 직능이 거칠게 다가왔다. 젊은 기자들의 품위 없는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인권 불감증, 안하무인의 태도가 불편했다. 저널리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전반이 때로는 상당히 불량하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대학에서 홍보업무를 맡고 있을 때의 일이다. 경찰기자 한 명이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따져 물었다.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곧바로 취재기자, 카메라기자 등이 학교에 찾아와 캠퍼스 곳곳을 촬영하더니 총장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다. 설득 끝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며 겨우 돌려



보냈지만 VCR 카메라를 둘러맨 채 대학본부 복도를 헤집고 다니는 3인 1조의 행동 거지는 지금까지 잊을 수 없다. 마치 현행법을 체포하려 들이닥친 경찰관 행세를 하는 모습은 동료교수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울 정도였다.

보도 후의 태도도 다르지 않았다. 대책점에 있는 이익집단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무리하게 쟁점을 찾아보니 사실관계의 왜곡이 많았다. 그래서 정정을 요구했지만 데스크에서는 반론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보도 내용이 100% 허위는 아니기에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취재기자는 한사코 회피하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가겠다는 최후통첩을 받고 서야 몇 줄의 반론 기사를 달았다. 정정을 요청한 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자신의 기사에 흠집이 나는 것을 좋아할 기자는 없을 것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 또한 저널리스트의 직업윤리인데도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또 하나 거론하고 싶었던 것이 언론사의 과도한 상(賞) 비즈니스

다. 언론계에는 언론사의 권위를 배경으로 객관성, 공정성 등에서 훌륭한 전통이 수립되어 있는 상들이 많다.

문제는 이런 상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수상한 상이다. 어느 날, 평소에 알고 지내는 중진화가가 전화를 했다. 한 신문사에서 상을 주겠다고 하는 데 받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도움을 청했다. 평생 그림만 그린 화가여서 세상 물정에 어둡긴 해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직감이 있었던 것이다. 내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 성격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누가 심사를 하는지 묻자 직원이 대답했다. “심사절차는 따로 없다. 그냥 내부적으로 결정한다.” 부서 차원에서 임의로 상을 주고 협찬금을 받는 시스템이었다. 실적이 필요한 사업부서에서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이겠지만 경제적 이익과 언론의 공신력을 맞바꾸는 셈이다. 나는 그 화가에게 “받는 게 이상한 상이니 없었던 셈 치라”고 조언했다.

신문 섹션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상은 광고와 협찬, 왜곡된 마케팅과 연계되면서 불신을 야기한다. 권위 잃은 상으로 인해 언

론사의 명예도 동반추락한다. 수상 사실이 오히려 불명예로 작용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름만 그럴싸하게 지었을 뿐 정체성이 모호한 언론단체가 상을 남발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유명회원뿐이면서 대표성을 주장하거나, 일부 전문지와 협력해 시상제도를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단체도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같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요인이 된다.

관찰자의 세 번째 시선은 어쩔 수 없이 문장에 쫓힌다. 요즘 언론인들을 문청(文靑)들이 많았던 과거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글로 밥을 먹고 사는 직업인이 최소한 갖추어야 할 덕목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려 한다. 문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학적 수준이 높은 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어법에 맞게 주제를 제대로 전달하면 족하다. 그런데도 문장의 기본에 어긋나는 글이 많다. 심지어 한 문장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다. 한 번은 이런 기사를 봤다. 미당 서정주의 동생 우하 서정태 시인에 관한 내용이다.

“내가 시를 쓴 건 전적으로 미당의 영향이야. 그런데 미당은 내 시를 한 번도 칭찬해준 적이 없었지.”

여기까지는 좋다. 형님이 문학을 하는 동생에게 아주 엄격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런데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우하는 딱 한 번 시집을 냈다. 86년 동아출판사가 펴낸 『천지의 노래』다. 미당이 그를 불렀다. ‘네 시 참 좋더구나.’ 처음이자 마지막 칭찬이었다.”

미당은 우하의 시를 칭찬했나, 하지 않았나? 지금도 궁금할 따름이다.

다음은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국종 의사와 나는 대화를 담은 기사다.

“이 교수에게 ‘왜 오만행을 결심했느냐’고 물었다. ‘그냥 나랑 같은 해군 출신이어서요. 환자 치료하는 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이 교수는 석 선장이 같은 해군 출신이라 오만에 간 것인가,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일념으로 간 것인가. 어떻게 이 짧은 글 안에 모순되는 내용의 문장이 나란히 자리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기자에게는 취재원의 육성을 그대로 전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취재원의 진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 또한 독자에 대한 예의이자 기자의 또 다른 의무다. 사소한 오기도 많다. 가령 ‘음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약칭인데도 ‘한국음반저작권협회’로 잘못 표기하는 것은 애교 수준으로 넘기기로 한다.

문장 이야기를 하면서 한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한 중앙일간지 기사의 내용인데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인터뷰한 기자가 이렇게 묻는다.


“4년제와 똑같이 학교명 끝에 교(敎) 자를 붙이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질문은 예리하지만 핵심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학교에서 ‘교’의 한자가 ‘校’임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잘못이 나오는 데 대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독자 입장에서는 한글 문장이 틀린 경우라면 음운구조상 오타라고 이해해 줄 여지가 있지만 이렇게 쉬운 한자 표기를 틀리면 기자의 기본 소양을 의심하게 된다.

한자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이외에도 많지만 짧은 독자들은 따분하게 여기니 ‘응답하라 1988’의 한 장면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드라마 말미, 드디어 선우와 보라가 결혼식을 올리는 대목이다. 여기서 살짝 스쳐가는 장면이 내 눈길을 끌었다. 바로 예식장 내에 신랑, 신부의 이름을 표기한 안내판의 내용이었다. 놀랍게도 ‘新郎 성선우 군, 神父 성보라 양’라고 적혀 있었다. 잘못 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나중에 검색해 보니 사실이었다. 빠듯하게 쫓기는 제작 환경이 만들어낸 실수겠지만 성보라가 가톨릭 신부라니!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컴퓨터 자판이다. 글 쓰는 사람들이 워드프로세서에서 한글을 한자로 바꿀 때 F9 자판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 때 한자 묶음을 선택할 때 실수가 발생하곤 한다. 언젠가 마포 강변의 잠두봉을 ‘蠶豆峰’으로 적은 기사가 있어 직접

‘잠두’를 치고 블록을 씌운 뒤 F9 자판을 눌러보니, 아니나 다를까. ‘蠶豆’와 ‘蠶頭’ 두 가지가 화면에 등장한다. ‘神父 성보라 양’도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게 아닐까 싶다.

기사는 시간과의 전쟁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늘 잘못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아쉬운 것은 보도 이후에도 잘못을 바로잡는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이런 오류가 바로잡히지 않은 채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영구적으로 보존된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161년 전에 잘못 표기한 이름을 바로잡은 뉴욕타임스의 사례가 떠오른다. 2014년 3월 4일 이 신문은 1853년 1월 20일자 기사에서 납치당한 흑인 남성 이름이 솔로몬 노섭(Nothup)인데도 노스롭(Northrop) 혹은 노스럽(Northrup)으로 잘못 표기했다며 정정 기사를 실었다. 



해외 글로벌 뉴스 플랫폼의 쇄도와 법적 문제

전응준 · 유미 법무법인 변호사

1. 해외 뉴스 플랫폼 기업의 국내 진출

가. 개요 및 특징

금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뉴스 플랫폼이 선보일 예정이다.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아티클(instant article)', 구글의 'AMP(Accelerated Mobile Page)'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서비스는 모바일 환경에서 뉴스 콘텐츠의 로딩 속도를 높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애플 역시 뉴스 플랫폼 시장에 발을 들여 놓고 있다. 애플은 iOS9를 선보이면서 뉴스 앱을 기본 탑재하였다. 애플과 페이스북은 자신만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iOS와 페이스북 앱 내부에서 이용자들이 뉴스를 소비하게끔 하는 전략을 취한다. 반면, 구글은 모바일 웹이라는 오픈 생태계에서 뉴스를 잘 보여주려 하고 있다. 이는 구글이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폐쇄된 생태계의 공세로부터 자신이 터 잡은 웹을 보호하려는 시도라고 해석된다. 한편 ICT와 미디어가 합체된 언론사라고 볼 수 있는 버즈피드(BuzzFeed)도 조만간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버즈피드는 콘텐츠 유통 흐름을 연구하던 ICT 기업이 직접 미디어 업계로 진출한 예이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이 자신이 잘 하는 ICT를 활용하여 뉴스 콘텐츠 플랫폼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보면 ICT와 미디어의 결합은 현재 미디어 업계의 중요한 흐름으로 보인다.

나.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아티클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아티클은 페이스북 내에서 뉴스 콘텐츠를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과거 모바일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뉴스를 읽기 위해 아웃링크 방식으로 언론사 홈페이지

지에 직접 접속해야만 했다. 이러한 방식을 페이스북 내부 페이지를 통해 뉴스를 읽을 수 있도록 인링크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¹⁾ 최근의 뉴스 콘텐츠는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웃링크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시키는 방식은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10초 이상의 긴 로딩 시간을 요구할 때가 많다. 인스턴트 아티클은 뉴스 공급자인 언론사들이 미리 뉴스를 페이스북에 업로드해 두고 페이스북 내부의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보여 주기 때문에 3초 이내로 로딩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관건은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아티클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가 얼마나 될 것인가이다. 언론사를 인스턴트 아티클로 끌어 들이기 위하여 페이스북은 페이지에 붙는 광고수익을 언론사와 일정 비율로 나누고, 언론사가 자체 수주한 광고수익은 해당 언론사가 전부 가져갈 수 있는 파격적인 수익배분 정책을 내세웠다. 현재 시험 서비스 중인 인스턴트 아티클에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버즈피드, 가디언 등 주요 미디어가 참여하고 있고 금년 4월경에는 모든 미디어가 인스턴트 아티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인스턴트 아티클과 같은 폐쇄적인 사이트에 의존하는 것이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유통지배력을 더욱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페이스북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언론사가 인스턴트 아티클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구글의 AMP

구글의 AMP는 뉴스의 로딩속도를 빠르게 하려는 점에서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아티클과 같다. 구글은 빠르게 로딩되는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툴인 AMP-HTML을 각 언론사들에게 오픈소스로 제공함으로써 개별 웹사이트 자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구글 검색엔진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결과와 관련된 뉴스 페이지가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되어 이용자는 자연스럽게 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AMP-HTML로 구현된 뉴스 웹사이트는 우선적으로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될 것이다. 인스턴트 아티클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페이스북이라는 앱 생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글의 AMP는 모바일 웹이라는 공개된 생태계에서 검색과 연관된 뉴스를 보여줌으로써 이용자들을 검색엔진으로 계속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이용자가 인스턴트 아티클을 구독하려면 페이스북에서 'instant article'을 검색한 후 '좋아요'를 누르면 된다.

라. 버즈피드(BuzzFeed)

버즈피드는 2006년 콘텐츠 확산 경로를 연구하는 정보기술(ICT) 기업으로 설립되었다. 위 회사는 어떤 콘텐츠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소비되고 확산되는지를 알게 되면서 직접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버즈피드는 독자의 콘텐츠 소비방식, 선호도를 즉각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독자층에 적합한 콘텐츠를 SNS 등의 다양한 플랫폼으로 전파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리스트클이 대표적인 예이다. 리스트클은 리스트(list)와 아티클(article)의 합성어로서, 예를 들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10개’ 등의 목록화된 기사를 말한다. 대체로 짧게 정리된 흥미위주의 가벼운 기사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정치, 경제, 국제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다. 버즈피드는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기자보다 기존 자료를 취합해 기사를 작성하는 에디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디터는 독자취향을 알아내는 데이터 분석기술의 도움을 받아 특정 부류가 공유할 만한 기사를 작성한다. 데이터 분석기술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버즈피드는 언론사라기보다는 기술기업에 가깝다. ICT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세운 것과 유사하게 데이터 사이언스로 무장한 ICT 기업이 언론업에 진출한 셈이다. 버즈피드는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미디어회사로 플랫폼회사는 아니다. 그러나 ICT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페이스북 등의 뉴스 플랫폼회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

가. 저촉 가능성이 있는 법률영역

(1) 정보통신망법 :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

글로벌 사업자의 뉴스콘텐츠 제공은 국내에서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형사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벌칙이 적용된다.²⁾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구제책으로서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

2) 대법원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 작위책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방치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도 주의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별개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판결).

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제44조의 3(임시조치)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요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는 2단계 구조를 택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범죄구성요건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있어서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외국기업, 외국규제당국이 이에 수궁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4조의3에서 규정한 정보의 삭제요청, 임시조치 역시 외국에서 집행가능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2) 전기통신사업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음란물 등

음란물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는 범위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법문화는 음란물을 표현의 자유에서 제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국외 글로벌 사업자가 음란물로 인식하지 않는 적법한 표현물이 국내에서는 음란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에 대한 국내의 법적 조치를 외국에서는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온라인상의 음란물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 정보에 해당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웹스토리지 등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음란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포함)을 적극적으로 필터링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³⁾). 이러한 적극적 필터링 의무는 OECD, EU, 미국, 일본에서 승인되고 있는 인터넷 정보매개자의 책임제한 원칙과 상충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개별 콘텐츠에 대하여 음란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을 위해 무리하게 해당 정보를 삭제하려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글로벌 사업자의 행동규범이 국내 법질서와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다.

(3) 저작권법

저작물은 베른조약, WCT 등의 국제조약으로 보호되고 있는 까닭에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은 핵심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을 여러차례 개정하여 저작물의 보

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기술적 조치 미이행시 형벌을 가한다. 이는 과태료로 그치는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의 태도와 다른 것이다.

호수준을 크게 상향시켰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규범의 충돌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저작권법 제104조는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극적 필터링 의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에서 드문 입법례이다.

(4)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특별법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힘이 미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의 절차, 개인정보보호의 정도 역시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견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opt-in)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서 EU 법제와 같이 사전 동의를 하나의 개인정보 처리 사유 정도로 보아야 하는 융통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없고 개별 영역에 따라서는 사후 거부(opt-out)방식의 개인정보처리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기업이 미국의 법제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할 경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국내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글로벌 뉴스 플랫폼 기업은 모두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다. 이들은 이미 EU에서 정보삭제권(소위 잊혀질 권리)을 둘러싼 다툼을 한 바 있다. 위 사건에서 개인정보의 범위, EU 법률의 역외 적용 등이 문제된 바 있었는데, 이들 미국 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의 문제

이들 외국 뉴스 플랫폼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국내에 지사 형태의 법인 사업장을 두고 있다. 이들 국내 지사는 대체로 광고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외국 본사가 수행하는 서비스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외에 있는 본사가 직접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본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외국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⁴⁾ 이 경우 외국 본사는 자국에서 서비스를 할 뿐이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한 바 없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른 법률적 쟁점으로 먼저 국제재판관할권이 문제된다. 외국 본사가 위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하

4) 하급심 판결에서도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사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는 미국 법인인 구글 Inc.라는 점을 들어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의 책임을 부인한 사례가 발견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4. 선고 2013나49885판결).

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불법행위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내국인이라면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어느 나라의 준거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하고 외국형사법과 외국행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맥락에서 정보통신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불법행위책임을 다루는 민사사건의 경우 국제사법 제32조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법이 준거법이 된다. 명예훼손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국내에서 발생하였다면 국내법인 정보통신방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준거법이 될 것이다.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베른조약 제5조 제2항이 국제사법 제24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 보호국법 주의에 따른다. 보호국법이란 보호가 요청되는 국가의 법을 말하므로 우리나라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이 제기되었다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준거법이 된다. 한편 국제사법 제27조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우리나라의 소비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국외 뉴스 플랫폼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한 관할권의 문제 즉 국제재판관할권, 준거법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인 문제는 판결이나 행정처분의 집행력 확보에 있다고 보인다. 외국 본사가 우리나라의 판결이나 행정처분에 승복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준거법이 된 우리나라의 법률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판결이나 행정처분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외국회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결은 해당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판결에 해당하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외국판결의 집행에 대해서는 자국 법원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두고 있어 만약 준거법이 된 우리나라의 법률이 해당 국가의 법률내용 내지 국제규범과 크게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판결의 집행이 불허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방법, 개인정보보호 법제, 일반 음란물에 대한 공법적 평가 등은 미국과 상당히 다르므로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결이 미국에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⁵⁾ 과거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구글 유튜브의 대응을 살펴보자. 우리 규제당국이 유튜브에 대하여 인터넷실명제를 관철하려고 하자 유튜브는 이를 거부하고 유튜브 한국어 사이트에서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달기를 금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유튜브는 이용자들을 본사 사이트

인 유튜브닷컴(www.youtube.com)으로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사이트의 국가 설정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선택하도록 하여 실명확인 없이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닷컴 사이트에서 국가 설정을 다른 나라로 하더라도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면 우리나라 이용자가 별 다른 불편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인터넷실명제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조치를 택한 것이다. 이 사건은 그 후 방통위가 유튜브를 국내 서비스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터넷실명제 대상 사이트에서 제외하면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증폭시켰다가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 자체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종결되었다. 만약 유튜브가 인터넷실명제 위반으로 형사처벌, 행정처분,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다면 그것이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 것인가. 인터넷실명제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입법이었고 국제규범과 현저한 거리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집행력의 확보는 외국기업의 자발적 이행을 요구할 정도로 국제규범과 부합한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설정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된다.

다. 사례

(1) 혐오 표현(Hate Speech) – 야후 사건⁶⁾

위 사건은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하여 프랑스와 미국 간에 관할권 논쟁을 촉발시킨 사건이다. 프랑스의 유대인단체인 LICRA와 재프랑스 유대인 학생단체인 UEJF는 2000년 4월 나치 기념물품의 전시·판매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야후에 미국 내 사이트에서 해당 물품을 내리든가 프랑스 이용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5) 미국법 중 외국판결의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2009년 기준 32개주가 가입된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Uniform Foreign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 4조 16이 거론된다. 이에 따른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는 ① 확정판결일 것 ② 판결국의 재판제도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 ③ 판결국이 피고에 대하여 재판관할이 있을 것 ④ 피고가 방어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절차의 고지를 받았을 것 ⑤ 판결이 사기에 의해 내려진 것이 아닐 것 ⑥ 청구 원인이 승인국의 공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위 모델법은 금전판결의 승인에만 적용된다.

6) 이향선 외 4인, 2015,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실효적 규제방안 연구”(방송통신심의위원회), 29쪽.

를 거부한 야후를 상대로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프랑스 법원은 해당 사이트가 프랑스어 배너광고를 띄우는 등 의도적으로 프랑스 이용자들을 상대로 판매행위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고 야후가 나치찬양 및 나치관련 물품판매를 금지한 프랑스 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야후는 위 프랑스 법원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 1월 프랑스 법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자사의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위 프랑스 법원 판결이 미국에서 승인·집행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연방지법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미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미국의 공서에 반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 사건은 2심 항소법원 전원재판부가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은 인정되 야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위 사건에서 프랑스 법원은 해당 사이트의 자국 내 판매행위를 근거로 자국 형법의 역외적용을 긍정하였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국경 간 서비스에서 자국의 관할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주는 최초의 판결이다. 또한 미국 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어차피 프랑스 이용자들은 프랑스 형법에 따라 해당 성격의 사이트 접속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러한 접속 금지를 제지하여 달라는 야후의 요구는 프랑스 이용자들이 하여금 프랑스 형법을 위반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수정헌법 1조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항소법원도 나치찬양물의 판매를 금지한 프랑스 법률체계를 긍정한 셈이 되는데, 이는 나치 찬양 표현물의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즉 외국기업에 대한 역외 규제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기준이 개별국가 차원에서 정립된 것이라기보다는 다수 국가나 국제협력체 등을 통해 합리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⁷⁾

(2) 잊혀질 권리 - 구글 스페인 사건

구글 스페인 사건은 여러 가지의 쟁점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스페인에 근거를 두지 않은 구글 본사에 대하여 EU 95년 Directive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스페인 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질의한 관할권(역외적용) 사항은 아래와 같다.

검색엔진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EU회원 국가에 해당 국가의 국민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사무실이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정보보호를 위한 회원국 행정기관의 명령 또는 요청이 그 사업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

7) 앞의 이향선 외 4인(2015) 33쪽.

이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Directive 95/46/EC 제4조(1)(a)에 따라 회원국 영토 내의 자회사 또는 지점을 통해 해당 회원국의 국민에 대하여 회원국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의 영토 내의 행위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회원국 법원의 관할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글 측은 구글스페인의 관여 없이 구글 본사에 의해 전적으로 검색처리가 수행되므로 구글 검색에 의한 개인정보처리는 구글스페인의 사업장 활동과 연계된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판시하면서 구글 본사의 EU회원국 영토 외에서의 개인정보처리는 회원국 영토 내 사업장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즉 외국 본사가 EU회원국에 자회사, 지점 등의 사업장을 두고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광고를 하였다면 이는 외국 본사가 EU회원국 영토 내에서 행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U 95년 Directive에는 명문의 역외적용 조항은 없었으나 이러한 해석에 의하여 미국 기업의 행위에 대해 EU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애플, 구글의 스마트폰 위치정보 캐쉬 암호화 사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캐쉬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이를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 조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일부 이용자의 동의철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함). 이에 대하여 애플, 구글 모두 향후 스마트폰에서도 위치정보를 암호화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방통위의 위 시정권고를 받아들였다. 당시 위치정보법령을 살펴보면 단말기에 있는 위치정보도 암호화를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⁸⁾ 그러나 애플, 구글은 당시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었던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⁹⁾ 법령상의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스마트폰 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그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정권고의 수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8) 전용준, 2012, “위치정보서비스의 법적 쟁점”, 한국정보법학회,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637쪽. 단말기를 ‘위치정보시스템’으로 보기는 어렵고 동 시행령상의 암호화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를 위한 암호화이지 위치정보 자체를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시정권고였다고 판단된다.

9) 앞의 이향선 외 4인(2015) 243쪽.

(4) 구글 스트리트뷰 사건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하여 거리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 중 암호화되지 않은 이용자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을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제64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에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인 2억 1,2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위 사건은 국내 오프라인에서 발생하였는데, 국외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명한 예이다.¹⁰⁾ 이 역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제재는 아니었고 세계 각국에서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경우였다.

3. 나가면서 – 국제적 추세와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규제조치의 필요성

ICT 산업은 금융업, 언론업 등에 비하여 규제가 없는 편이고 이에 익숙한 페이스북, 구글 등은 국내법령의 규제조치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왕왕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발생한 여러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뉴스 플랫폼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는 외국 ICT기업에 대한 법 집행력 내지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령이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국제적 흐름 및 시장이 요구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규제 중에는 인터넷실명제, 강제적 섯다운제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규제가 있다. 이러한 독특한 규제는 국내법에 의한 판결이나 행정처분이 있더라도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일단 제정된 법률은 주권의 행사 차원에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국제적 추세와 시장의 요구에 반하는 규제는 실제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외국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집행력이 없는 규제조치는 결국 국내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이므로 국내외 사업자 간의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다. 

10) 법리적으로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22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 이용자 사이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글의 이용자가 아닌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생방송 인터뷰 보도의 객관성 판단 기준은?

– 서울고법 2016. 1. 21. 선고 2015누47364 판결을 중심으로

노만경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신문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법의 시행에 따라 ‘종합편성(綜合編成)채널’이 등장하면서 우리 방송업계는 그야말로 무한경쟁의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은 흔히 ‘종합편(綜編)’이라고 불리는데, 뉴스 보도를 비롯해 드라마·교양·오락·스포츠 등 모든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¹⁾ 모든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지상파’와 차이점이 없으나 케이블 TV나 위성TV를 통해서만 송출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가구만 시청할 수 있다. 또 하루 19시간으로 방송 시간을 제한받는 지상파와 달리 24시간 종일 방송을 할 수 있고 중간광고도 허용되는 차이점이 있다. 미디어 관련법에 의하면 신문사와 대기업은 종합편의 지분을 30%까지, IPTV의 지분은 49%까지 소유할 수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케이블TV나 위성TV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에 맞먹는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대기업과 신문재벌이라는 거대 자본의 언론시장 장악과 언론의 독과점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한다.²⁾

1) 방송법 제2조 제18호는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터넷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20221&cid=40942&-categoryId=31759>(검색일: 2016. 2. 29.)

다양한 방송채널의 등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분명 순기능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자본의 논리상 과열경쟁으로 인한 왜곡·과장 보도의 문제가 대두되고, SNS를 통한 신상 털기 등의 현상과 결합하면서 명예훼손이나 여론조작의 우려도 낳고 있다.

우리 방송법은 종편 등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한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보도를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종편의 뉴스와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당 판결을 통해 방송보도에 관한 규제 법리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방송규제의 근거 및 적용사례

헌법 제21조³⁾는 제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과 같은 언론·출판이 가지는 자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 허가나 검열은 허용될 수 없겠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 정도의 제한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3)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여야 하고,⁴⁾ 방송통신위원회⁵⁾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방송업자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또는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⁶⁾ 위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⁷⁾

1963. 12. 16. 법률 제1535호로 제정된 방송법에는 위 제재조치에 관한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1973. 2. 16. 법률 제2535호로 개정된 방송법 제6조 제1항에서 방송윤리위원회는 보도 논평의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 방송윤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해 사과·정정·해명 또는 취소 등을 하게 하거나, 관계자의 출연정지, 집필정지 또는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언론윤리위원회법 및 방송법이 폐지되고 제정된 언론기본법(1980. 12. 31. 법률 제3347호로 제정된 것) 제39조 제1항 및 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방송법(1987. 11. 28. 법률 제3978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1항도 위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었다. 그 후 1990. 8. 1. 법률 제4263호로 개정된 방송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방송위원회⁸⁾는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등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해 시정 등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에서 본 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었고,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⁹⁾

주지하듯이 방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하나의 매체가

4) 방송법 제33조 제1항.

5)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그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종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하던 정보통신에 대한 규제 역할과 정보통신부가 보유하던 방송 및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각종의 인허가 및 승인권을 갖게 되었다.

6) 방송법 제100조 제1항.

7) 방송법 제100조 제2항.

8)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이다.

9)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결정.

고, 국민들이 여론 형성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방송의 매체적 특성상 기술적, 경제적 진입 장벽이 높아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보유하고 정보의 유통을 제어하는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방송매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음성과 영상을 동



시에 직접적으로 전파하기 때문에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최근에는 방송 채널의 증가로 방송매체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방송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매체의 특수성 때문에 방송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의사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결집될 가능성이거나 여론에 대한 일방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오용될 위험성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방송이 한 번이라도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면 여론의 왜곡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후에 이를 정정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송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즉, 입법자에게는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방송에서 가능한 한 균형 있고 완전하게 표현될 것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앞서 본 제재조항은 이러한 균형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책무를 부담하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¹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규정에 따라 방송업자에게 제재조치를 취한 사례는 적지 않다. 한 지상파 방송사는 뉴스보도에서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사립대 설립자의 보석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피고인의 실루엣으로 유력 정치인인 모 의원의 사

10)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위 뉴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조치를 하였다. 이후 위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위 제재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¹¹⁾ 살펴볼 판결도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채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자 방송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판결 요지 및 쟁점

원고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2014. 4. 18. 뉴스 프로그램에서 2014. 4. 16. 오전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실종자 구조 작업과 관련해 프로그램 진행자가 해난구조 전문가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후 위 인터뷰 내용의 일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4. 8. 7. 위 인터뷰 내용 중 일부분(이하 ‘문제된 인터뷰 내용’)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함으로써 심의규정 제14조¹²⁾ 및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4. 12.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 제24조의2 제2항¹³⁾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프로그램에 대하여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는 의결을 한 다음,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처분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하였고, 원고는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¹⁴⁾ 항소심인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1)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합183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4599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3974 판결.

12)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②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취재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고지방송 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편의상 생략한다.

대상 판결은 사건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통한 뉴스보도 프로그램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의 기초가 되는 객관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방송법 제 3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판결은 ‘같은 매체 또는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므로 방송의 공정성은 매체별·채널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 준수 여부에 관한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은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뉴스 프로그램이고, 특히 이 사건 인터뷰는 재난 등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영된 재난 등에 대한 방송에 해당하므로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방영해야 하는 필요성이 일반적인 다른 뉴스 프로그램보다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중편방송사업자인 원고가 재난보도에 관한 이 사건 뉴스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은 객관성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 진행자가 문제된 인터뷰 내용의 서두에서 밝힌 구조수단으로서 다이빙벨의 유용성에 관한 정보가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여러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인터뷰는 “다이빙벨이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불명확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타당한 것인지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터뷰 부분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해설·논평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해설·논평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보도의 객관성’이 요망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위배하였다고 하였는데 매우 의미 있는 판시라고 생각된다. 이 사건 인터뷰는 사건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려는 목적보다는 인터뷰 대상자인 사건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시청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 의견에 대해 진행자가 부연 설명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시청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무조건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형성하도록



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문제된 인터뷰 내용은 단지 전문가가 일방적인 견해를 주장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설·논평 프로그램’에 해당함에도 ‘보도의 객관성’이 요구된다고 본 이유에 대해 대상판결은 ‘인터뷰라는 방식을 통해 전문가나 관계자의 발언을 청취하는 경우, 그와 같은 발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진위를 규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도 인터뷰 대상자의 지위나 경력,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시청자가 진실하고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인터뷰를 시청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인터뷰 대상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그와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시하여 인터뷰 대상자의 위주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바 없고, 결국 이 사건 인터뷰를 통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이빙벨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채택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문제된 인터뷰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원래 보도의 ‘객관성’은 사실보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사실의 보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확립된 판례이다.¹⁵⁾ 즉, 판례는 ‘언론매체의 기사가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경우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⁶⁾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자가 인터뷰를 통해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도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이빙벨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채택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

15)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1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였고, 그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법원이 기존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인터뷰라는 방식을 통한 사실보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보도지침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방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매체로서 작용하고 여론의 형성에 중요하므로 가능한 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편채널의 등장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차원에서 순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자본의 논리로 인해 왜곡·과장 보도 등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대상판결은 인터뷰를 활용한 방송보도에 있어서의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가 지켜야 할 객관성 확보의 방법에 관해 매우 의미 있는 판시를 남겼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 두고 있지만 방송의 객관성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겠다. 





세익스피어와 민주주의

박홍규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세익스피어는 자유가 억압된 불평등한 봉건사회에서 최소한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민중들을 철저히 경계했다. 주인에게 반항적인 하인, 집단으로 권력에 저항하는 민중은 그의 작품에서 철저히 매도당한다.

크로스비의 세익스피어

올해는 세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이다. 그래서 영국은 물론 범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기념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세익스피어의 사상, 특히 정치사상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지금도 찾아보기 어렵다. 거의 유일한 논의가 어니스트 크로스비라는 미국 법률가에 의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한글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1856년에 태어나 1907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의 생존 당시는 물론이고, 사후 1세기가 넘는 지금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으로 유명하다. 1889년부터 5년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판사를 역임한 이색 경력을 지니기도 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에 외국인 법률가가 한국에 와서 서양법 계수 작업을 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

크로스비는 법률가이면서도 톨스토이와 카펜터 등 예술가에 대한 책을 많이 썼다는 점에서도 독특한 인물이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죽기 직전에 쓴 세익스피어 작품의 반(反)민주주의를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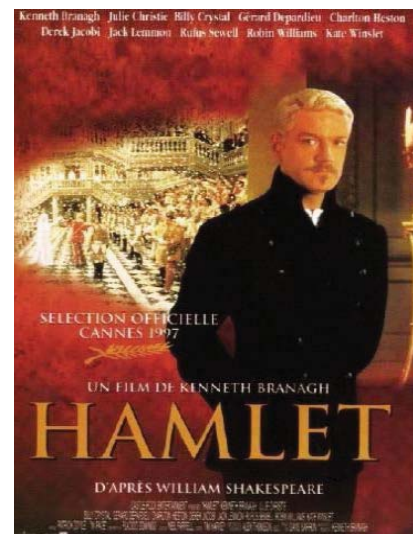
히 비판한 『노동계급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태도』이다. 이 글의 요지는 셰익스피어가 그의 모든 작품에서 왕과 귀족을 끝없이 찬양한 반면 민중은 철저히 모멸했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민중을 향한 온갖 욕설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우리에게 그 점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채 셰익스피어는 고상한 예술작품의 대표 격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 당대에는 물론 지금도 서양에서 그의 연극은 TV 드라마와 같은 대중예술로 인식되고 있다. 셰익스피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먼저 이 점에서 서양과 차이가 있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제목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대부분 왕(가령 ‘리어’나 ‘맥베스’)이나 왕자(‘햄릿’) 또는 장군(‘오셀로’)의 이름이다. 사랑의 대명사인 ‘로미오와 줄리엣’도 귀족의 자녀들이다. 다른 작품의 주인공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민중은 주연은커녕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 수준으로 등장하고 그마저 대부분 비뚤어진 성격의 형편없는 인간들로 묘사된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민중은 『헨리 6세』에 나오는 잔 다르크 정도인데 그녀도 경멸을 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녀가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대접받지 못한 이유는 영국의 적인 프랑스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이 아니라, 농사꾼의 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만약 그녀가 오필리어처럼 귀족의 딸이었다면 보다 긍정적으로 표현되었을지도 모른다.

『헨리 6세』에는 잔 다르크 스스로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개탄하며 양치기인 아버지를 “늙은 구두쇠! 천하더 천한 몹쓸 노인네!”라고 욕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처럼 셰익스피어는 잔 다르크를 불효녀로 만들뿐 아니라 지배계급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일 정도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셰익스피어는 지배계급에 철저히 복종하는 민중에 대해서만 대우하는 태도를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천한 존재로 다루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자유가 억압된 불평등한 봉건사회에서 최소한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민중들을 철저히 경계했다. 주인에



영화 <햄릿(1996년작)>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http://movie.naver.com>)]

게 반항적인 하인, 집단으로 권력에 저항하는 민중은 그의 작품에서 철저히 매도당한다. 셰익스피어가 군주주의자이자 귀족주의자로서 민주주의에 반대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크로스비가 인용한 셰익스피어 희곡의 수많은 대사들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보거나 읽거나, 영화로라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반민주적인 태도인데도, 그 점을 언급하면 이상하게도 화부터 내며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 중에는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16,17세기는 군주의 시대이고 모두가 군주주의자였으니 셰익스피어만을 비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당대에도 셰익스피어와는 다르게 민중을 긍정적으로 그린 작품을 쓰거나 민중의 자유와 평등을 기원한 사람들이 많았다. 지배자가 없는 『유토피아』를 그린 토머스 모어나, 『에세』를 쓴 몽테뉴,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계급을 초월한 작품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 등이 그 예다. 심지어 『군주론』의 마키아벨리도 시민정치를 옹호했다.

토머스 모어는 왕 바로 다음의 권력자였지만 노동자를 신뢰했고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인식했다. 그리고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을 부정하며 유토피아를 꿈꿨다. 그러나 지배자가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셰익스피어는 마지막 작품 『태풍』에서 모어의 유토피아를 야유했다. 『태풍』의 해당 부분을 두고 셰익스피어가 유토피아주의자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셰익스피어와 가장 대조적인 작가는 세르반테스라 할 수 있다. 몰락한 귀족인 돈키호테도 그렇지만, 그의 하인으로 나오는 산초 판자야말로 르네상스 문학에서 창조된 가장 위대한 민중상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에게는 그런 민중에 대한 애정이 결여되어 있다. 절대적 신앙이나 지배자를 거부하는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음에도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한 르네상스 정신과는 상충되는 인물이었다. 특히 셰익스피어를 뒤이은 크롬웰을 비롯한 영국 민주주의 개척자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이 크로스비가 비판한 셰익스피어의 반(反)민주주의다.

톨스토이의 셰익스피어

크로스비의 생애에서 흥미로운 점은 1894년 이집트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러시아에 들러 톨스토이를 만났을 정도로 톨스토이에 심취했었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카추샤의 재판을 다룬 『부활』을 읽고 톨스토이를 존경하게 되었다는 법률가를 본 적이 있는데, 크로스비는 『부활』이 발표된 1899년보다 이른 시기부터 톨스토이주의자였다. 크로스비는 톨스토이가 살았던 러시아의 재판 제도는 물론 미국의 사법제도, 특히 사형제도에 비판적이었다. 또, 톨스토이가 『부활』을 쓴 이유가 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크로스비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보

다 1세기 이상 앞선 시기였다는 것이다.

크로스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톨스토이와 의견을 함께 했다. 앞에서 본 크로스비의 글은 톨스토이가 『셰익스피어와 연극』이라는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고, 톨스토이의 글은 크로스비의 글의 서문으로 발표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톨스토이가 죽기 직전인 1903년부터 1906년 사이, 즉 75세부터 78세 사이에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연극을 되풀이하여 읽고 본 뒤에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 쓴 그 글은 그의 『예술이란 무엇인가?』와 함께 톨스토이 예술론의 백미로 꼽을 수 있다. 셰익스피어 전문가는 물론 톨스토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도덕주의라는 비난을 받으며 곧잘 무시되는 글이지만, 필자는 그 글이 셰익스피어에 대해 최고로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톨스토이는 먼저 셰익스피어 작품을 50년 이상 읽었지만 언제나 혐오감과 따분함과 당혹감만을 주었다고 하면서 셰익스피어 작품 중 걸작으로 꼽히는 『리어 왕』을 분석한다. 『리어 왕』은 본래 사악한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왕인 아버지에게 아첨하여 유산을 많이 받게 되지만, 왕이 아끼던 셋째 딸은 왕을 칭송하지 않아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에서 출발한다. 톨스토이는 평생을 함께 산 딸들에 대해 이러한 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는 등 『리어 왕』의 전체 스토리가 얼마나 황당하고 시대적 고증이 빈약한지를 논한다. 또,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과장되고 공허하며, 감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장광설을 구사하여 ‘언어의 무절제’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비판한다. 톨스토이는 셰익스피어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주제와 내용, 즉 반(反)민주주의에 있다고 지적한다. 셰익스피어는 기성의 질서에서 벗어나려 하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을 끔찍하게 여기고 거부한다. 그에게 재산, 가족, 국가는 신성한 것이지만,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려는 포부는 인간 세상에 악몽을 초래하는 광기일 뿐이다. 이처럼 톨스토이의 견해는 앞에서 본 크로스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톨스토이는 여기에 덧붙여 셰익스피어가 기성 질서 중에서도 애국주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즉 신성불가침한 영국의 왕권,

톨스토이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비판은 도덕성의
결여, 천박함,
영성한 플롯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Gustav pope, '리어왕의 딸들'
[출처: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King_Lear)]



적군인 프랑스군 수천 명을 죽이면서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는 영국군, 마녀로 간주되는 잔 다르크 등으로 표현되는 소비니즘에 대한 비판이다. 왕족이나 귀족의 외면적 상승은 탁월함으로 간주되고, 노동자 계층은 경멸당하며, 기존 질서의 개선을 지향하는 모든 종교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분투는 인정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종교적’이라는 것은 원시 기독교의 반국가적이고 반권력적인 진보를 뜻한다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셰익스피어가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벤 존슨 등 당대 작가들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나 19세기 독일에서 재평가되어 그 명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그 주역은 괴테였는데 프랑스 예술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대신 자기 작품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특히 자신의 인생관이 셰익스피어와 일치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를 위대한 시인으로 칭송하였다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비판은 도덕성의 결여, 천박함, 영성한 플롯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와 같은 영국인인 조지 오웰은 톨스토이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비판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가령 『캔터베리 이야기』를 쓴 초서나 『데카메론』을 쓴 보카치오보다는 도덕적이라고 평한다. 이 점에 대한 오웰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톨스토이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렵다. 오웰은 괴테 등으로 인해 셰익스피어가 유명해졌다는 톨스토이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세기 내내 독일에서 셰익스피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괴테를 비롯한 많은 독일 문인들이 셰익스피어에 대해 극찬한 글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당시 셰익스피어 작품에 의거해 프랑스의 의고주의 비극을 기피하고 시민극을 지향하는 작품들이 집필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오웰이 톨스토이의 주장을 비판한 것 중 유일하게 인정할만한 점은 셰익스피어의 인기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톨스토이가 죽고 난 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톨스토이보다는 셰익스피어가 대중에게 더 유명하다는 점은 확실하다. 설령 그것이 영어나 영화를 비롯한 영미문화의 영향이라고 해도 셰익스피어의 유명세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셰익스피어의 인기가 작품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나의 셰익스피어


앞에서 소개한 크로스비나 톨스토이, 오웰 외에도 셰익스피어를 비판적으로 본 사람들은 많았다. 톨스토이 이전에도 사무엘 존슨이나 바이런이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볼테르와 나폴레옹이 있었다. 톨스토이 이후에는 버나드 쇼와 윌리엄 모리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있다. 버나드 쇼는 셰익스피어의 철학이 ‘공허하고 도덕적으로 천박하고 남루하며 사상가로서는 박약하고 비

일관적이고 속물적이며 저속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했다. 앙드레 지드가 『리어 왕』을 너무 인위적이라고 비판한 것도 톨스토이의 비판과 같은 맥락이었다. 그밖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아무리 언급해보아도 셰익스피어에 대한 찬양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뿐이다. 셰익스피어를 서양문화의 최고봉으로 여기거나 서양인들이 숭배하는 문화적 영웅들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지나칠 정도다.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 침략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의 식민지 침략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 침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모방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일본의 침략은 비판하면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침략은 대단히 문명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셰익스피어의 제국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은 그의 최후작인 『태풍』이다. 원주민인 캘리번이 괴물로 등장하여 노예처럼 부러지는 이 연극은 제국주의의 전형이다. 그런데 이 연극을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각색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식민지적 관점을 배제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태풍』 외에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제국주의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내용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령 『베니스의 상인』은 유대인에 대해, 『오텔로』는 흑인이나 아랍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드러낸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도 마찬가지다. 또 성차별주의나 가부장주의 같은 전통적인 반(反)민주주의도 셰익스피어의 여러 작품에 나타나있다.

사실 제국주의는 반(反)민주주의를 국제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反)민주주의가 개인 간의 자유와 평등을 부정하고 지배계급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제국주의는 나라 사이의 자유와 평등을 부정하고 강대국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영국이 제국으로 발전하지 않았더라면 셰익스피어는 영국 내 수많은 작가 중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얻은 작가 정도로 평가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초상
[출처: 위키미디어(<http://https://ko.wikipedia.org>)]

유럽사법재판소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 판결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변화

최경진 · 가천대 법학과 교수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올 제4차 산업혁명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초연결혁명을 이끄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에 선진 각국은 개인정보의 다각적인 활용을 통한 산업의 발전을 꾀하면서도, 자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초연결혁명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요구와 EU를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이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EU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에 힘을 실어준 계기가 된 것이 스노든 사건이다. 또,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소위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관련된 구글 스페인 판결을 통해서도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¹⁾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EU는 EU 회원국 전역에서 일관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개인정보보호규정안²⁾의 입법화 작업에 가속도를 붙였다. 그리고 2015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가 미국과 EU의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안전망 역할을 해 온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에 대해

1) Case C-131/12, Google Spain SL, Google Inc. v Agencia Espanola de Proteccion de Datos (AEPD), Mario Costeja Gonzalez (May 13, 2014).

2) 개인정보보호규정안의 최초안은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OM(2012) 11 final (Jan. 25, 2012),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document/review2012/com_2012_11_en.pdf (검색일: 2016. 3. 1.)

무효를 선언하면서, EU는 미국이 EU의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수용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EU는 기존의 세이프 하버 협정을 대신하는 소위 'EU-US 프라이버시 보호막(EU-US Privacy Shield)'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미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공방은 우리가 향후 글로벌 무역 거래와 협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화 판결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협정이란?

미국은 EU와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EU가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기준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서 7가지 항목의 세이프 하버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을 충족하는 미국 기업은 EU 기준에 적합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하는 기업으로 간주되어 아무런 제재 없이 EU와 개인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다. 이 원칙은 1998년 11월 4일 초안이 발표된 이후



5차례 수정을 거쳐 2000년 5월 31일 EU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그 내용이 승인되었으며, 2000년 6월 9일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세이프 하버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지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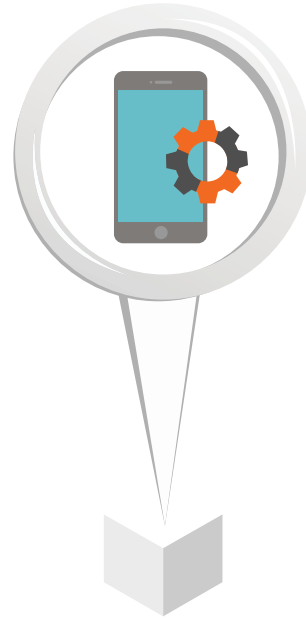
최초 정보수집 시 또는 그 후 가능한 빨리 통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초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최초로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선택 (Choice)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공개, 최초수집 목적 외 이용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사후 철회(opt-out)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민감한 정보의 경우 사전 동의(opt-in)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3) 제공 (Onward Transfer; Transfers to Third Parties)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통지 및 선택에 관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3자가 세이프 하버 원칙에 가입하였거나 EU 지침 혹은 기타 적절한 방법을 준수하거나, 최소한 세이프 하버 원칙의 관계조항이 요구하는 정도와 동일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한다는 서면협정을 그 제3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가 제한사항 등에 반하여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혹은 제3자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어떠한 제한사항 등에 반하여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안전성 (Security)

개인정보 관련 기록을 생성, 유지, 이용 또는 보급하는 자는 손실과 오용, 비인가 접근, 공개, 변경이나 파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데이터 무결성 (Data integration)

개인정보는 세이프 하버 원칙에 적합하도록 사용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당초 수집 목적 또는 개개인이 허가한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정보의 원래 목적에 맞는 사용, 정확성, 완전성, 그리고 최신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접근 (Access)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여 그 비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비해 그리 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7) 집행 (Enforcement)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는 원칙의 준수 및 원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인을 위한 청구권,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제재 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재조치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엄격해야 한다. 또한 매년 자체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이프 하버 원칙에 따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2. 세이프 하버 협정의 법적 근거가 된 EU 개인정보보호지침³⁾

세이프 하버 협정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EU가 채택한 개인정보보호지침 상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체계가 있다. EU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EU지침'⁴⁾ 전문 제57항과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국⁵⁾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EU지침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의 '적절성(Adequacy)' 여부는 제3국으로의 정보 이전 활동과 관련된 주변 사정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의 성격,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기간, 개인정보의 최초 이전국과 최종 도착국, 제3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규범·직무규정 및 보안조치 등 개인정보 이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⁶⁾ EU의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의 적절성 평가 관련 보고서⁷⁾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실체적 판단기준과 절차적 판단기준에 의하여 보호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3) EU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최경진,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0집 제1호(2013), 31-63쪽 참조.

4)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95/46/EC.

5) 제3국이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을 제외한 그 밖의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EEA 회원국 간 정보이동은 제3자로의 이동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6) 이광현, 2010,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과 보호: EU와 영국,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제50호, 120쪽 ; 한국인터넷법학회, 2009, “개인정보 보호와 적정 활용의 조화를 위한 제도 도입 연구”, 법제처, 143쪽.

7) EU Working Party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Working Document, “Transfers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Applying Articles 25 and 26 of the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1998. 7. 24)

〈실체적 판단기준〉

	기준	내용
기본 원칙	1. 목적제한의 원칙	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처리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제공되어야 함
	2. 정보의 질 확보 및 비례성 원칙	데이터는 정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함. 또한 데이터는 이전 또는 처리되는 목적에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목적에 비해 과도해서는 안 됨
	3. 투명성 원칙	개인은 처리목적, 처리자 등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제공받아야 함
	4. 안전성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
	5. 열람·정정 및 반대할 권리	정보주체는 처리중인 자신에 관한 데이터의 사본을 받아볼 수 있고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 처리를 반대할 권리를 가져야 함
	6.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1차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다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도 적절한 보호수준의 원칙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됨
추가 원칙	1. 민감정보 처리제한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는 데이터는 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확보해야 함
	2. 다이렉트 마케팅 제한	데이터가 다이렉트 마케팅 목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는 opt-out을 할 수 있어야 함
	3.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 제한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위한 개인정보 이전의 경우, 개인은 그러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로직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개인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함

〈절차적 판단기준〉

	기준	내용
	1. 보호원칙이 잘 준수되는 체계의 확보 (good level of compliance)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의 의무를 뚜렷이 인식하고, 정보주체가 자신들의 권리 및 행사방법을 잘 알 수 있는 보호체계를 갖추어야 함. 또, 효과적이고 억제력이 강한 제재수단을 통해 보호원칙을 존중하도록 유도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도와 주는 보호체계(support and help to individual data subjects)	개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과도한 비용부담 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민원·고충에 대한 독립적 조사가 보장되는 제도적 메커니즘 필요
	3. 보호원칙 미준수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 필요 (appropriate redress)	손해배상이나 적절한 제재조치가 가능한 독립적 조정 또는 중재 시스템 필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제26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수준이 EU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허용된다.⁸⁾ 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에 명백히 동의한 경우, ②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



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계약 체결 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이전, ③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 사이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이전, ④ 중요한 공익적 근거에 기초하거나 소송의 제기, 수행 및 방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이전, ⑤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이전, ⑥ 개별 사안에 있어서 법률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되었고 동시에 공중이나 이해관계자의 상담(consultation)에 제공될 목적으로 구축된 등록부(register)로부터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전이 허용된다. 나아가 위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의 보호와 행사를 위해 적절한 보호 조건을 제시한 경우라면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EU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회원국은 제3국으로 개인정보 이전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행해야 할 개인정보의 보호조건은 계약에 의해 보증하는 것도 가능하다.⁹⁾¹⁰⁾ 한편,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는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회원국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3국과 협상을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제3국의 국내법, 제3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위원회와의 협상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국이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¹¹⁾

8) Directive 95/46/EC Art. 26(1)

9) Directive 95/46/EC Art. 26(2)

1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에 따른 국외이전도 허용되며, 여러 국가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BCR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BCRs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박희일, 2005,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개인정보보호 기업규칙(BCRs)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0권 제2호, 159-190쪽 참조.

11) Directive 95/46/EC Art. 25(3)~(6)

EU 지침 제25조 제6항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의 목록(White list)¹²⁾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³⁾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이전 시 적절한 안전조치(adequate safeguards)를 마련하기만 한다면 EU 내 기업들은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외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도 있다. EU는 제한적으로



로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기¹⁴⁾ 때문에 제25조는 현실적으로 그 의의를 상실한 반면 제26조의 유용성이 증가하면서 예외가 원칙을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¹⁵⁾

EU 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EU 집행위원회에 EU지침 제25조 제6항을 기초로 제3국이 국내법이나 가입한 국제협약에 의해 적절한 보호수준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르면 먼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제안이 있어야 하고, 제29조 작업반의 체계 내에서 EDPS(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와 각 회원국의 정보보호감독기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후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제31조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집행위원회의(College of Commissioners)의 결정으로 채택된다. 그러나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언제라도 집행위원회에 그 행위가 EU 지침에서 정한 실행권한을 초과하는 견지에서 적절성 결정을 유지, 수정 또는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적절성 결정을 받게 되면, 부가적인 안전조치 없이 28개 EU 회원국과 3개 EEA 회원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으로부터 제3국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절성 결정은 법 집행 분야에서의 정보 교환은 규율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개인정보의 이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PNR(Passenger Name Record) 협정이나 TFTP(Terrorist Financing Tracking Programme) 협정과 같은 별도의 협정에 의해 국가 간 이전이 가능하다.

12) White-list에 실린 국가들의 목록은 EU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Directive 95/46/EC Art. 26.(6)

14)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Andorra, Argentina, Canada (commercial organisations), Faeroe Islands, Guernsey, State of Israel, Isle of Man, Jersey, New Zealand, Switzerland, Eastern Republic of Uruguay, US (EU-US Privacy Shield)가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international-transfers/adequacy/index_en.htm (검색일 : 2016. 3. 23.)

15) 임규철, 2007, "개인정보의 국외이송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 : 한·미 FTA의 금융신용정보 국외이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365호, 159-175쪽.

3.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1) 사건개요

EU 지침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 of the data)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미국과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에 관한 세이프 하버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 기업들이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2008년부터 페이스북(Facebook) 이용자였던 오스트리아의 대학생 막스 슈렘스(Maximillian Schrems)의 청원으로 세이프 하버 협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막스 슈렘스는 페이스북에 제공했던 자신의 개인정보가 페이스북 아일랜드 자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서버로 이전되어 처리되었는데, 스노든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면 미국의 법과 실무 상 미국으로 이전된 정보가 NSA 등 미국의 공적 기관에 의한 감시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아일랜드 정보보호청에 청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아일랜드 감독기구는 EU 위원회가 미국 상무부와 적절한 보호 수준 제공을 위한 자발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0년 7월 26일 세이프 하버 협정을 체결,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청원을 거절하였다.¹⁶⁾ 이 세이프 하버 협정에 의해 4,000개 이상의 미국 기업들이 EU로부터 미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0월 6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15년 가까이 유지해 온 세이프 하버 협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¹⁷⁾

(2) 판결의 주요 내용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핵심 내용은 세이프 하버 체계가 EU 지침 하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으로 전송되는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접근이(특히 세이프 하버 협정에 대한 문언적 검토에 비추어 세이프 하버 협정이 엄격한 관점에서 필수적이고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미국 집행당국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유럽 기본권 헌장에 의해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와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며, 미국의 감청이나 감시와 관련해 유럽 시민이 질의하는 경우 적절한 회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유럽 기본권 헌장에 의해 보호되는 효과적인 침해 제거 및 보상에 대한 유럽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집행위원회가 세이프 하버 협정을 채택하였더라도, EU 회원국 내

16) 2000/520/EC: Commission Decision of 26 July 2000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7) C-362/14, Maximilian 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EU지침의 요건을 준수하였는지를 독자적으로 검토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궁극적으로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지를 결정할 권한은 유럽사법재판소가 가진다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세이프 하버 협정의 무효를 선언하였다.




(3) 판결의 효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가 허가하거나 EU 지침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이프 하버 협정에 의한 EU에서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불법이 되었다. 따라서 세이프 하버 협정에 따라 EU 자회사로부터 미국 모회사나 다른 미국 법인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던 다국적 기업은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s)과 같이 세이프 하버 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기초로 즉각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EU 회원국 내의 정보보호감독기구들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EU 지침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보호 수준과 조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이프 하버 협정이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협정의 체결이 불가피해졌고, 미국과 EU는 신속히 협상에 나서 지난 2월초 EU와 미국 간 ‘프라이버시 보호막(EU-US Privacy Shield)’을 타결했다. 이전에도 EU 개인정보보호규정안의 입법추진 과정에서 세이프 하버 협정의 개정 논의가 진행된 바 있고, 2013. 11. 27. EU 집행위원회가 투명성, 대체적 분

쟁해결 체계의 구제, 집행 개선, 미국 당국에 의한 접근 등 13개 권고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이번 세이프 하버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난항을 겪던 세이프 하버 협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되었다. 더불어 미국 내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생겨났다. 2014년 1월 오바마 정책 지침 28(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28)은 정보보호 관점에서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업무수행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EU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특히 새로운 협정의 타결에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 개인정보 침해 시 구제(Redress)가 가능하도록 미국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이었는데, 프라이버시 보호막 체결 직후 미국 정보기관의 잘못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법구제법(Judicial Redress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협약 체결과 시행을 앞당겼다.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 판결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글로벌 인터넷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기업들의 요구에 힘입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을 주장해온 미국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EU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새로운 협약 체결을 통해 개인정보의 활용 못지않게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양 진영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 글에서는 자세히 소개하지 못했지만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안이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강력한 보호 요구만큼이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요구도 상당 부분 수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최종안에는 개인정보의 합리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처리 기준이 입법화되었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규율은 그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는 합리적인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해석·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 '신(新) 국가 안전법' 제정과 사이버 규제의 강화

문혜정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중국공산당 창설 94주년과 홍콩 반환 18주년을 맞이한 2015년 7월 1일 중국 정부는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제정하였다.¹⁾ 신(新) 국가안전법 제1조는 “국가안전을 유지하고, 인민민주독재 정권 및 중국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며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시키기 위해 동법을 제정하였다”고 법률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²⁾ 신 국가안전법은 2014년 중국 정부가 창설한 중앙국가안전위원회의 활동 근거가 되는 법으로, 정치, 경제 및 군사, 인터넷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한편, 우주, 심해, 극지방에서의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정권의 전복, 국가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영토 보전, 경제 질서의 유지, 자원 확보, 인터넷 규제 강화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전법의 준수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전 중국인 공동의 의무”라고 하면서, 홍콩과 마카오는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신 국가안전법을 통해 인터넷 주권³⁾ 개념을 제시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명문화하였다. 이는 향후 중국 내에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하여 국가와 개인 간 법익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판단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어 주목된다.

본고는 중국의 신 국가안전법 제정 배경 및 경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인터넷 강화 규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및 해외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 국가안전법은 2015년 7월 1일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찬성 154표, 반대 0표, 기권 1표) 같은 날 공포, 시행되었다.

2) 신 국가안전법 제1조.

3) 통상 인터넷 주권은 IP와 DNS 서버의 통제권 등을 의미한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 등에서 인터넷 주권은 국가적 차원에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권한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참조: 『매경이코노미』, 2015. 12. 20. 최진홍, “중국의 인터넷 주권 화두, 위선과 위선의 대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661>).

신 국가안전법 제정 배경 및 경과

최근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보다 강력한 국가안전보장 체계의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첩보 활동 사실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1월 24일 중국판 국가안보국(NSA)이라 불리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하였다.⁴⁾ 2014년 4월 개최된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내세우며, 정치, 문화, 군사, 경제, 첨단기술,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가안전을 수호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⁵⁾ 더불어 중국 정부는 보다 강력한 국가안전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1993년 제정된 구 국가안전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된다.

2015년 7월 1일 새롭게 제정된 신 국가안전법의 성립 과정은 2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2014년 11월 1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 11차 회의에서 기존의 국가안전법⁶⁾의 주요 내용을 계승한 반스파이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1993년 제정된 구 국가안전법을 폐지하였다.⁷⁾

이후, 2015년 7월 1일 신 국가안전법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신 국가안전법은 구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안전의 개념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2015. 7. 1. 신 국가안전법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 되었음을 보도한 신화사의 뉴스화면 캡처 (출처: 江苏警官学院保密办网站, 2015.7.10. “新国家安全法实施 明确建设网络与信息安全保障体系”, <http://baomi.site.jspi.cn/Item/Show.asp?m=1&d=2078>)

국가안전의 범위를 비전통적 안전보장의 영역까지 폭넓게 규정

신 국가안전법은 1장 총칙, 2장 국가안전의 유지임무, 3장 국가안전의 유지책임, 4장 국가의 안전제도, 5장 국가안전보장, 6장 공민, 조직의 의무 및 권리, 7장 부칙 등 총 7장 8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법 제2조에서는 국가의 안전을 “국가의 정권, 주권, 통일 및 영토보전, 인민의 복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하여 상대적인 위기 없이 내외에서 위협을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그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⁹⁾ 이처

4) 2014년 1월 24일 중공중앙정치국(中国共产党中央政治局, Politburo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주석으로 하고,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와 장더강(张德江)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주석으로 하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中央国家安全委员会, Central Committee for State Security)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5) 『人民网』, 2014. 4. 16. 沈丁立, “中央国家安全委员会首次会议发出‘两大信号’”, <http://me2.do/x5jTpanA>(검색일: 2016. 2. 29.)

6) 구 국가안전법은 1993년 제정되었고, 총 34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반 스파이 활동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였다.

7) 반 스파이법(反间谍法, 主席令第16号、2014年11月1日公布、同日施行) 제정과 함께 1993년 제정된 구 국가안전법은 폐지되었다.

8) 신 국가안전법의 상세 내용은 다음 사이트(<http://me2.do/GBbUt8bv>) 참조.

9) 신 국가안전법 제2조.



럼 국가안전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은 중국 정부가 “국가안전”의 범위에 전통적 안전보장 영역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안전보장 영역을 포함시켜 대외적인 안전과 함께 중국 내 안정성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¹⁰⁾ 중국 정법대 마화이더(马怀德) 부총장은 “신 국가안전법은 인터넷상 국가의 주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의 사이버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¹¹⁾

이처럼 중국이 사이버 보안 및 인터넷 규제에 적극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방대해지면서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둘째,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한 반정부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의 배경으로는 중국의 젊은 층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 정부는 이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민 및 조직의 국가안전유지의무 및 위반 시 처벌규정

신 국가안전법 6장에서는 공민 및 조직이 준수해야 하는 국가안전유지의무를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동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국 공민 및 조직은 ① 헌법과 법률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② 국가안전에 위해가 되는 활동의 단서를 발견 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③ 국가안전에 위해가 되는 활동에 대해서 알게 된 증거를 사실대로 말하고, ④ 국가안전 업무를 위해서 조력해야 하며, ⑤ 국가안전기관, 경찰기관 및 관련군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협력하고, ⑥ 알게 된 국가기밀을 지켜야 하며, ⑦ 법률 및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신 국가안전법은 국가안전 유지의무를 이와 같이 규정하면서도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단지 제13조와,¹²⁾ 제15조에서 국가안전 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만 정하고 있어 향후 국가안전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행정법규, 부문법규 등이 제정되면 처벌 수위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가안전법의 적용대상에는 중국에 진출해있는 해외기업들도 포함되므로 관련 법령의 제정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 정부, 인터넷상에서도 ‘국가의 주권’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

신 국가안전법 제25조는 사이버공격 및 네트워크를 통한 기밀누설, 온라인상 불법 유험정보 배포행위 등 온라인상 범죄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국민의 주권과 안전 및 이익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상 정보안전보장체계를 구축

10) 신 국가안전법 제8조.

11) 『中华网』, 2015. 7. 2. “新国家安全法首次明确‘网络空间主权’概念”, <http://me2.do/FJT5Rl8F>(검색일: 2016. 2. 29.)

12) 신 국가안전법 제13조 “국가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의 관계자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사사롭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개인이나 조직이 동법 및 유관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안전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가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하여 인터넷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상에서도 국가의 주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¹³⁾ 중국 정부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앞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높은 수준의 통제와 검열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내부적으로는 국가 체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에 진출해있는 해외 IT기업들을 통제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 내 체제의 안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신 국가안전법의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동법 제15조는 “인민민주주의 전제정권을 전복하려고 하거나, 전복하려고 선동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 및 저지하고, 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당독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¹⁴⁾ 따라서, 동 조항에서 의미하는 “인민민주주의 전제 정권”이란 중국 공산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만약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국가 안보를 위협에 처하게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동 조항에 근거하여 국내의 모든 사이버 공격이나 인터넷상 민주주의의 계몽 및 시위, 사회운동과 관련한 정보를 차단하거나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동 조항은 사전 방지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서 실제로 민주화를 선동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단속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일부 전문가들은 새 국가안전법의 시행으로 중국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IT기업에 대한 통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 조항을 통해 중국 정부는 주요 인터넷망 인프라와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므로 중국 정부가 기업 시스템에 백 도어(back door)를 만들어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사용자의 데이터, 기업의 지적 재산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신 국가안전법 제정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

신 국가안전법과 중국 정부의 인터넷 주권 개념에 대해 해외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 국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개념이 모호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 9월 7일 자이드 라이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중국의 신 국가안전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동법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⁵⁾

또한, 해외언론은 중국 정부의 해외 IT 기업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3) 『新华网』, 2015. 7. 21. “《国家安全法》为依据全面维护网络空间安全”, <http://me2.do/Gq6jFLwy>(검색일: 2016. 2. 29.)

14) 중국 정부는 공산당 이외에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중국 8개 정당인 주당파를 인정하고 있다. 8대 민주당파는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 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지공당, 구 삼학사, 타이완민주자치동맹이 해당한다. 이들 8개의 민주당파는 중국인민정치 협상회의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산당의 정치활동에 협력한다.

15) 『UN News Centre』, 2015. 7. 9. “UN rights chief concerned by ‘broad scope’ of China’s new security law”, <http://me2.do/FhTH4KhC>(검색일: 2016. 2. 29.)

뉴욕타임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임에 틀림없지만, 중국 정부가 기업의 시스템에 백 도어(back door)를 만들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될 경우 기업의 기밀 유출로 직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헌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의 안정을 확보할 의무'

중국 헌법 제35조는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여행·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51조에서 제54조는 국민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의 안정을 확보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사회·집단의 이익과 기타 국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¹⁶⁾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¹⁷⁾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기밀을 지키며, 공공재산을 애호하고, 노동기율과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여야 한다.¹⁸⁾ 또한, 국민에게는 조국의 안전·영예·이익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¹⁹⁾ 이러한 헌법상 국민의 의무는 중국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인터넷상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

16) 중국 헌법 제51조.
17) 중국 헌법 제52조.
18) 중국 헌법 제53조.
19) 중국 헌법 제54조.



2015년 7월 9일 실시된 외교부 화춘잉(华春莹) 대변인의 기자회견 장면 (출처: CCTV, 2015. 7. 9. “UN의 국민의 자유 제한 발언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 <http://news.cntv.cn/2015/07/09/ARTI1436450164819156.shtml>)

열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검열과 감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2015년 7월 9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화춘잉(华春莹) 대변인은 신 국가안전법의 핵심은 ‘인민 안전’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안보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근거로 신 국가안전법 제1조의 ‘인민의 근본이익 보호’, 제7조의 ‘인권의 존중과 보장, 합법적인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 규정을 들었다. 또, 일부 조항에는 국가가 국민과 조직의 안보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고 밝혔다.

신 국가안전법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및 방침

신 국가안전법 시행 이후, 중국 관영매체 신화망(新华网)은 신 국가안전법은 국가안전이 직면한 새로운 정세와 과제에 적응하기 위해 종합적 국가안전관을 법률의 형식으로 확립한 중요한 조치라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명확히 법 제도화

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의 자유나 기업의 장기적인 유지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²⁰⁾ 또한, 중국정부가 운영하는 종합 언론 사이트 중국망(中国网) 일본어판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중동을 휩쓸었던 ‘아랍의 봄’과 스노든 사건을 예로 들면서 국가의 사회 동란은 전파 수단이 격변할 때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 인터넷이 위와 같은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 움직임을 가속화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²¹⁾

또,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정수나(鄭淑娜) 부주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내에서 인터넷 공간이나 정보기기의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서구 국가들이 자국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 제정한 법률과 같은 취지에서 제정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언제나 전 세계에 열린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중국 법률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²²⁾

중국 정보기술보안평가센터, 미국 IT기업들에 ‘컴플라이언스 승낙’ 요구

신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2015년 9월 중국 정보기술보안평가센터(中国信息安全测评中心)는

애플, 구글, IBM을 포함한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에게 중국식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컴플라이언스 승낙’을 요구하였다. 중국 정보기술보안평가센터(中国信息安全测评中心)가 미국 기업에 요구한 보안 준수 규정의 정식 명칭은 ‘사용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기술제품 공급자의 승낙서’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 Supplier Declaration of Commitment to Protect User Security)²³⁾이며,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약서 앞부분에는 중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을 것, 고객 정보를 변환하지 않을 것, 고객 정보를 국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사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이용 규약에 동의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나 서약서 뒷부분에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감독활동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상에도 주권이 존재한다는 신 국가안전법의 내용과 상통하는 조치로 중국 정부가 백 도어를 통해 기업의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한 사안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해외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기업의 서비스를 검열하고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기밀정보가 유출되거나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당국자는 승낙서는 중국 정보기술보안평가센터가 중국에 진출해있는 해외기업에 송부한 의견수렴서로 국내법과 국제관습에 기초한 것일 뿐이라는

20) 『新华网』, 2015. 7. 2. “专家解读新国家安全法：首次以法律形式提出“维护国家网络空间主权”, <http://me2.do/xWc5dGcY> (검색일: 2016. 2. 29.)

21) 『中国网(일본어판)』, 2015. 7. 10., “新「国家安全法」中国は对外開放をペースダウンさせるのか”, <http://me2.do/5CdckRrH>(검색일: 2016. 2. 29.)

22) 『中国网』, 2015. 7. 1. “全国人大通过国家安全法回应何种情况下适用于香港”, http://news.ifeng.com/a/20150701/44080924_0.shtml(검색일: 2016. 2. 29.)

23) 『뉴욕타임스』, 2015. 9. 16. “The Pledge China Wants Tech Companies to Sign”, <http://me2.do/GXMfIzpj> (검색일: 2016. 2. 29.)



입장을 밝혔다.²⁴⁾

인터넷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 '네트워크 안전법'²⁵⁾ 제정 추진

2015년 7월 5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의 초안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2015년 8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네트워크 안전법의 초안은 총 7장 6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법안의 목적은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과 인터넷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⁶⁾ 또 해당 법안은 네트워크 보안과 안전, 감독 및 경고, 긴급조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인터넷 실명제 및 유사시 정부가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전 신분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사용자가 신분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⁷⁾ 아울러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허가를 거쳐 일부 지역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²⁸⁾ 앞서 제정된



'사용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기술제품 공급자의 승낙서'의 내용을 공개한 뉴욕타임스 보도화면 캡처 (출처 : 『뉴욕타임스』, "The Pledge China Wants Tech Companies to Sign", <http://me2.do/GYkX3ylp>)

신 국가안전법에서는 위반 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네트워크 안전법의 경우 위반 시 처벌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동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한국에도 도입된 적이 있다.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지만, 시행 5년만인 2012년에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폐지되었다.²⁹⁾ 다만, 공직선거법상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 중의 실명확인 의무³⁰⁾는 남아있다. 그러나 해당 부분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폐지되어야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제정 및 폐지의 과정과 비교해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정부가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

24) 『中国新闻网』, 2015. 9. 18. "中国要求美企签承诺书中方称报道不实", <http://me2.do/5SoXVUcZ> (검색일: 2016. 2. 29.)

25) 네트워크안전법 (초안)의 상세 내용은 다음 사이트 (<http://me2.do/FCKuYex6>) 참조.

26) 네트워크안전법 (초안) 제1조.

27) 네트워크안전법 (초안) 제20조.

28) 네트워크안전법 (초안) 제50조.

29) 헌법재판소 2012. 8. 23.선고 2010헌마47 결정.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기사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络安全法) 초안을 대중에게 공개한 이후 해외 언론들은 인터넷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보도하기도 했다. 예컨대, 일본 언론에서는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초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나 ‘비상시 인터넷 제한조치’와 관련된 조항들이 언론 통제를 강화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³¹⁾

한편, 2015년 12월 9일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루웨이(鲁炜) 주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을 위한 입법 기관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터넷상 단속을 한층 더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정부의 네트워크 안전법 제정이 인터넷 통제와 검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사회적 특색에 맞는 인터넷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인터넷상 언론의 자유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³²⁾

내 상황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신 국가안전법은 국가안전수호에 무게를 두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중 FTA 체결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 국가안전법의 제정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IT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도 신 국가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IT 기업 신 국가안전법 관련 동향에 주목해야

한국도 얼마 전 ‘테러방지법’ 제정을 두고 국가 안보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과, 개인의 충분한 권리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신 국가안전법은 국

31) 『record china』, 2015. 7. 14. “中国がネット安全法の草案を公開、実名性や非常時のアクセス制限などで統制強まる恐れ—英メディア”, <http://me2.do/GM7UqFs6> (검색일: 2016. 3. 20.)

32) 『浙江在线』, 2015. 12. 9. “欢迎更多国家加入“朋友圈”国家网信办主任鲁炜答记者问”, <http://me2.do/GGJZUDYL> (검색일: 2016. 2. 29.)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스마트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언론보도를 접할 수 있는 요즘
만약 언론보도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센터 개설로 이제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에서도
내방교육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언론통재 아카데미

- 대상 언론사, 대학,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시간 2시간(1~3시간 내 조정가능)
- 장소 위원회 또는 교육 요청기관의 강의실
- 내용 언론분쟁 해결방안, 언론조정 중재절차 및 사례 등
- 신청 조정중재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edu.pac.or.kr>
- 문의 교육운영팀 02) 397-3092~5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운영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 신문, 잡지, 뉴스통신의 불공정선거기사에 대해 자체심을 합니다.
- 후보자(출마 예정자)는 불공정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의 조치내용 :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주의 사실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권고 결정
- 후보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처리합니다.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 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48시간 이내에 반론보도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

